

발 간 등 룩 번 호

11-1450000-000011-01

한·호주 FTA 상세설명자료

2014. 4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 동 설명자료는 한·호주 FTA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정문의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되었으며 자료상의 용어는 협정상의 법률적 용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Contents · 목차

1	서문, 최초규정 및 정의	7
2	상품무역	9
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31
4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39
5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43
6	무역구제	49
7	국경 간 서비스 무역	53
8	금융서비스	63
9	통신	71
10	자연인의 이동	75
11	투자	79



12	정부조달	95
13	지식재산권	101
14	경쟁정책	107
15	전자상거래	109
16	협력	111
17	노동	115
18	환경	117
19	투명성	119
20	분쟁해결	121
21	제도규정	127
22	일반적 규정 및 예외	129
23	최종규정	133

서문, 최초규정 및 정의

◆ 서문 주요 내용

- 서문은 협정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대한 선언적 내용 포함
- 양국의 긴밀한 관계, 무역·투자의 자유화의 목적, 무역·투자 장벽의 제거, WTO의 권리·의무 존중 등

◆ 최초규정 및 정의 주요 내용

※ 제1절 최초규정(Initial Provisions)과 제2절 일반적 정의(General Definitions)로 구성

- 최초규정에서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타협정과의 관계, 지역 및 지방정부의 협정이행 의무를 규정
-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기준의 양자 및 다자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 확인
-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과 불일치가 있을 경우, 양 당사국은 공동으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해 서로 즉시 협의

- 국제관습법에 따라 협정 의무 이행의 정부 범위를 중앙, 지역 또는 지방정부로 규정

▣ 정의규정에서는 협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의 규정

※ 영역(territory), 국민(national), 중앙·지역정부, 관세, 조치, 기업, FTA에 원용된 각종 협정 등의 정의를 규정

■ 국민(national)의 정의

- 한국 : 「국적법」상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국민
- 호주 : 「호주시민법(2007년)」에 정의된 호주 시민 또는 「이민규정(1994년)」에 정의된 영구 거주자

■ 중앙정부 및 지역정부, 지방정부의 정의

- 양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정의

구분	중앙정부	지역정부	지방정부
한국	중앙 정부	-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
호주	영연방(Commonwealth) 정부	주 정부, 수도특별지역 (Capital Territory), 노던테리토리 (Northern Territory)	지역정부 산하의 모든 정부

■ 영역(territory)의 정의

우리나라	호주
1) 대한민국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2)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1) 노퍽 섬,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 (킬링) 제도, 애쉬모어와 카르티어 제도, 허드섬과 맥도 널드 제도 및 코랄시 제도의 영역 외에 모든 외부 영역을 배제, 그리고 2) 국제법에 따라 호주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호주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

상품무역

◆ 개요

- 관세의 단계적 철폐, 관세 인상 또는 새로운 관세 도입 금지 (standstill) 등 상품의 시장접근 관련 각종 의무사항은 협정문에 규정하고, 품목별 관세철폐 기간 및 양허유형은 부속서에 규정
- 식량 또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 금지 또는 제한 채택시 상대국에 사전 통보 및 협의 기회 제공 의무를 포함하여, 수출입 제한 금지 의무 규정
- 무역 관련 비관세조치의 투명성 보장 의무 규정

◆ 상품무역 협정문

1. 관세 철폐 (제23조)

- 부속서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 각 품목의 관세를 인하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

-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품목별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위해 협의할 의무를 부여

2.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제한금지(제22조 및 제26조)

- 당사국은 1994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 (제2.2조)
- 당사국은 1994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수출 및 판매에 대해서 금지 또는 제한 부과 금지 (제2.6조)
- 특히, 당사국이 식량 또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려는 경우, 상대국에 실행 가능한 한 사전 통보 및 요청시 관련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제공

3. 수리 또는 개조후 재반입되는 상품(제24조)

- 양국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적용
-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와 무관

4. 일부 상품에 대한 면세(제25조)

- 양국은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 및 인쇄된 광고물에 대해 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

5. 비관세조치(제210조)

- 양 당사국간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의 투명성 보장의

중요성 및 어떠한 조치도 양 당사국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인정

- 비관세조치와 가장 밀접한 협의체에서 합리적인 기간 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동 협정상의 상품무역 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고, 가급적 12개월 이내에 권고사항과 함께 그 검토 결과를 양 당사국에 제출

6. 상품무역위원회 설치 (제211조)

-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 설치
 - 어느 한 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 요청시,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 상품무역위원회의 기능은 △ 관세 철폐의 가속화 등을 포함한 양 당사국간 상품무역 증진, △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검토와 더불어,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해 그 검토 결과 및 권고사항을 공동위원회에 회부 등을 포함

◆ 상품 양허

- 상품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향후 양국간 교역 증진 기대

※ 한·호주 교역(2013년) : 총 303억불(對호주 수출 96억불, 수입 208억불)

- 양측은 현재 교역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관세철폐

※ 품목수 기준 : (우리) 94.3%, (호족) 100%
수입액 기준 : (우리) 94.6%, (호족) 100%

〈한·호주 FTA 전체 품목 양허수준 비교〉

양허단계	우리 양허				호주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8,940	75.2	11,097	72.4	5,625	90.9	8,456	86.3
무관세	1,932	16.3	8,391	54.7	2,945	47.6	4,836	49.3
유관세	7,008	59.0	2,706	17.7	2,680	43.3	3,620	36.9
3년/3A년	1,019	8.6	367	2.4	115	1.9	950	9.7
5년	564	4.7	2,684	17.5	414	6.7	391	4.0
7년	265	2.2	15	0.1	—	—	—	—
8A년	—	—	—	—	32	0.5	2	0.0
10년	413	3.5	335	2.2	—	—	—	—
(10년내)	11,201	94.3	14,498	94.6	6,186	100.0	9,799	100.0
10년 초과	492	4.1	804	5.2	—	—	—	—
10년간 50% 감축	12	0.1	0	0.0	—	—	—	—
계절관세	5	0.0	3	0.0	—	—	—	—
양허제외/ 현행관세(TRQ)	171	1.4	25	0.2	—	—	—	—
총합계	11,881	100	15,330	100	6,186	100.0	9,799	100.0

* 품목수 : (우리측) HS 2010, 10단위 기준, (호주측) HS 2012, 8단위 기준

수입액 : (우리측) '07~'09년 3개년 평균 (호주측) '12~'13년 2개년 평균 (단위 : 백만불)

- ▣ 한-호주 FTA는 우리나라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원자재 및 농축산물 등을 수출하는 전형적인 산업간 무역 형태를 가지는 양국간 교역구조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평가
 - 우리의 對호주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관세율 5%), TV · 냉장고 (5%), 일반기계(5%)를 포함하여 호주로 수출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8년 이내 관세 철폐
 - 반면, 우리의 對호주 수입 중 78% 이상이 유연탄, 원유, 동광 등 광물 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바, 한·호주 FTA 체결로 인한 추가 개방 부담은 미미

참고 : 2013년 기준, 한-호 주요 교역품목 (금액, 전체수출입 대비 비중)

- (수출) 승용차(19.6억불, 20.5%), 자동차부품(2.8억불, 2.9%), 철구조물(6.6억불, 6.9%), 건설중장비(1.5억불, 1.5%), 합성수지(1.4억불, 1.4%), 칼라TV(1.3억불, 1.4%) 등
- (수입) 철광(59.8억불, 28.9%), 유연탄(51.7억불, 24.9%), 원유(17.5억불, 8.4%), 가죽육류(8.6억불, 4.2%),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7.8억불, 3.7%), 동광(7.4억불, 3.6%) 등

- 우리의 對호주 주력 수출품목인 가솔린 중소형 승용차 및 칼라 TV · 냉장고 등에 대해 즉시 철폐를 확보하여, 호주 내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 선점
- 우리의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과 장기 관세철폐 기간을 통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 우리는 쌀, 돼지고기(냉동삼겹살), 분유, 천연꿀, 감귤, 인삼, 전복, 뱀장어 등 주요 농수산물 162개 품목(품목수 기준 1.4%)에 대해 양허제외

〈 한 · 호주 FTA 상품양허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

우리 양허		양허단계	호주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승용차, 화물차, 자동차부품, 윤활유, LNG, 합성고무, 합성수지, 가죽, 단판, 동괴, 산동물(돼지, 닭, 산양), 버찌(신선), 아몬드(탈각), 밀(제분용), 메슬린 가루, 야자유, 당밀(기타), 포도주, 양어(냉장 · 냉동 · 훈제) 등	8,940	즉시철폐	5,625	가솔린중소형승용차, 디젤화물자동차, 디젤소형, 타이어, 칼라TV, 냉장고, 합성고무, 에어컨, 열연강판, 직물, 가죽, 문구류, 섬유사, 카스테레오

우리 양허		양허단계	호주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밸브, 기타목재류, 아스파라거스, 치커리, 국화, 야자유, 당밀(기타), 조제식료품 (오트밀), 마요네스, 생모피, 기타빙과류, 커피의각, 데어리스프레드, 닭새우류 (냉동), 남방참다랑어(냉동) 등	1,019	3년/3A 철폐	115	디젤중형승용차, 가솔린대형승용차, 디젤대형기타, 가솔린회물자동차, 자동차부품(기어박스, 차체부품, 제동장치, 로드휠, 완충기), 밸브, 중고차
원유, 양간철, 단판, 배추 · 완두 · 당근(신선), 옥수수가루, 소시지, 사탕수수당밀(기타), 유자(조제), 오렌지주스(기타), 포도주스(기타), 유정(사료용), 밀크알부민 등	564	5년 철폐	414	백판지, 도금강판, 필름류, 기타지, 판지, 의류, 양말, 신발, 축전지, 타이어튜브, 안전유리, 기타타이어, 샌시, 석면제품, 계측기, 베어링
제재목, 돼지식용설육, 토마토, 양배추 · 완두 · 살구(신선), 대두유, 혼합쥬스, 맥주, 아이스크림, 옥수수 기타 등	265	7년 철폐	—	—
	—	8A 철폐	32	양탄자, 의류(남성바지, 신사복 등)
니켈괴, 연괴, 아연괴, 섬유판, 코르크, 건축용목제품, 합판, 목제생활용품, 면양(신냉, 냉동), 강낭콩, 렌즈콩, 은행(탈각), 망고(신선), 전분(밀), 올리브유, 유채유, 사탕수수당밀(주정용), 돼지고기(냉장) 등	413	10년 철폐	—	—
기타목재류, 섬유판, 합판, 버터기제조제품, 커피크리머 제조용의 것, 카세인글루, 옥동 (냉동), 불락(냉동), 멸치(건조), 계살(냉동), 대게(산것, 신냉), 굴(건조), 홍합(냉동), 소라(냉동) 등	64	12년 철폐	—	—
냉동크림 등	2	13년 철폐	—	—

우리 양허		양허단계	호주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조제분유, 체더치즈	2	13년 철폐 (TRQ)	—	—
쇠고기, 파티클보드, 일부 섬유판, 소식용설육 (신선/냉장, 족/냉동, 기타/냉동), 장소의 것), 돼지고기(냉동), 튤립절화, 아바카도, 호박, 감자, 잣(탈각), 매니옥칩(건조), 인삼엑스, 유장(기타), 변성유장, 유장분말(기타), 유장기타(혼합 분유), 넙치(냉동), 고등어(냉동), 참다랑어(피레트(냉동)), 꽃게(냉동), 오징어(냉동) 등	332	15년 철폐	—	—
버터, 버터(기타), 조제분유 (기타), 사료용근채류(기타), 맥주액, 맥아(볶지않은 것)	6	15년(TRQ)	—	—
냉동크림(기타), 조제분유(기타) 등	3	17년 철폐	—	—
닭고기(냉동, 냉장), 영지버섯, 멜론(신선), 레몬, 마늘(냉동), 당근(건조), 옥수수(팝콘용), 밤(냉동), 전분(매니옥), 정제설탕(기타) 등	71	18년 철폐	—	—
치즈(모차렐라, 크림, 가공 등)	4	18년(TRQ)	—	—
밀크와 크림	2	20년 철폐	—	—
치즈(가우더, 카망베르, 에멘탈, 기타 등)	5	20년(TRQ)	—	—
혼합양념	1	세번 분리	—	—
녹두, 맥아(훈연), 전분(옥수수 · 감자 · 고구마), 대두, 사료용 근채류, 대두, 이눌린 등	12	10년간 50% 감축	—	—

우리 양허		양허단계	호주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포도, 키위, 맨더린	3	계절관세	—	—
감자	1	계절관세/세번 분리	—	—
오렌지	1	계절관세(TRQ)	—	—
대두(콩나물용), 대두(기타)	2	현행관세(TRQ)	—	—
쌀 및 쌀 관련 품목, 파티클보드, 합판, 탈전지분유, 연유, 돼지고기(냉동), 천연꿀, 양파(신냉), 녹용, 쪽파(신냉), 고추, 마늘, 파, 수박, 사과, 감귤, 겉보리, 쌀보리, 참깨, 낙화생, 인삼, 전복(산것·신선·냉장), 명태(냉동), 굴(냉동), 범장어 기타 (앵귈라종(활어)) 등	169	양허제외	—	—
	11,881	총합계	6,186	

◆ 분야별 세부 상품양허

1. 공산품 (임산물 포함)

- ▣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호측은 거의 모든 품목 5년내 관세철폐)

* 호주는 품목수 기준 99.4%, 수입액 기준 100%에 해당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5년내 철폐

* 우리는 품목수 기준 99.4%, 수입액 기준 99.9%에 해당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10년내 철폐

- 우리의 對호주 주요 공산품 수입은 철광, 유연탄, 원유 등 자원 광물에 집중되어 있고, 여타 공산품도 호주의 경쟁력이 높지 않아 한·호주 FTA로 인한 실질적 추가 개방 효과는 제한적

〈 한·호주 FTA 공산품 (임산물 포함) 양허수준 비교 〉

양허 단계	우리 양허				호주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즉시	8,577	86.4%	10,288,181	75.7%	4,551	89.0%	8,365,555	86.2%
3년	792	8.0%	356,822	2.6%	107	2.1%	950,173	9.8%
3A					8	0.2%	149	0.0%
5년	325	3.3%	2,648,918	19.5%	414	8.1%	390,639	4.0%
(5년내)	9,694	97.6%	13,293,921	97.8%	5,080	99.4%	9,706,516	100.0%
7년	85	0.9%	5,765	0.0%				
8A					32	0.6%	2,147	0.0%
10년	94	0.9%	279,896	2.1%				
(10년내)	9,873	99.4%	13,579,582	99.9%	5,112	100.0%	9,708,662	100.0%
12년	36	0.4%	10,397	0.1%				
15년	15	0.2%	476	0.0%				
양허제외	7	0.1%	738	0.0%				
합계	9,931	100%	13,591,193	100%	5,112	100%	9,708,662	100%

* 품목수는 HS 2010(한국), 2012(호주) 기준, 수입액은 '07~'09년 평균(한국), '12~'13년 평균(호주)

* 3A : 종가세(5%) 및 종량세(12,000 호주달러)에 대해 3년 동안 균등철폐

* 8A : 3년 동안 기준 관세 유지, 이행 4년차부터 5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되어 이행 8년차에 무세

- 호주측은 우리의 對호주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12년 對호주 수출액 23.3억불, 관세율 5%) 관련,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 등 20개 세번에 대해 즉시철폐 및 나머지 세번 3년 철폐

〈 자동차 관련 호주측 양허 〉

양허 단계	주요 품목명	품목 수	대한국수입 (12-13평균)	수입액 비중
0	가솔린승용차(1500~3000cc), 가솔린승용차(1000~1500cc), 디젤자동차(기타)(1500~2500cc), 디젤화물자동차(5톤이하)	20	1,547백만불	71.2%
3	가솔린승용차(3000cc초과), 디젤승용차(1500~3000cc), 디젤승용차(3000cc초과), 디젤자동차(기타)(1500cc미만)	11	627백만불	28.8%
3A	중고차	8	0.1백만불	0.0%
총합계		39	2,174백만불	100%

* 3A : 종가세(5%) 및 종량세(12,000 호주달러)에 대해 3년 동안 균등철폐

- ▣ 또한, 우리의 주요 수출 공산품에 대한 호주측 관세(대부분 5%)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 업계의 對호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TV · 냉장고 · 세탁기 등 가전제품(관세율 5%, '12년 對호주 수출액 3.3억불), 전선 · 변압기 등 전기기기(5%, 2.2억불), 건설중장비·섬유기계 등 일반기계(5%, 5.5억불) 품목은 대부분 발효 즉시 관세철폐
 - 자동차부품(5%, 2.9억불)은 대부분 3년내 철폐, 타이어(5%, 1.2억불)는 대부분 즉시철폐
 - 냉연강판, 열연강판, 도금강판 등 주요 철강제품(5%, 3.5억불)에 대해 대부분 즉시철폐, 일부 품목은 5년 철폐
 - 석유화학(0% 또는 5%, 2.6억불) 관련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 대부분 즉시철폐, 일부 품목은 5년 철폐

※ 對호주 총수출의 32%(29.4억불)를 차지하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은 무세

〈 한·호주 주요 수출입 공산품 양허 비교 〉

순위	우리 양허 (對호주 주요 수입품)				호주 양허 (對호주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07-09 평균	우리 양허	품목명 (HS 8단위)	관세율 (%)	수출(천불) 12-13 평균	호주 양허
1	유연탄(기타)	0	2,027,838	0	2710.20.00의 훈힙물 외의 디젤(기타)	0	1,989,782	0
2	석유(기타)	3	1,931,568	5	가솔린 승용차 (1500~3000cc)	5	1,084,666	0
3	강점결성 코크스용탄	0	1,348,359	0	가솔린(기타)	0	743,776	0
4	적철광	0	1,275,838	0	기타의 기계(자주식이 아닌것에 한한다)	0	607,015	0
5	기타 적철과 그 정광 (응결하지 않은 것)	0	1,056,633	0	디젤승용차 (1500~2500cc)	5	435,968	3
6	석유(窸窸 15도에서 비중이 0.904를 초과 하고 0.966 이하인 것)	3	652,406	5	항공기 연료로 사용되는 등유	0	316,524	0
7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1	517,815	0	디젤승용차 (1500~2500cc)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것, 조립된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 인것)	5	307,127	0
8	동광과 그 정광	0	432,620	0	열교환기(기타)	5	215,938	0
9	기타 코크스용탄	0	307,423	0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기타)	5	182,905	0
10	연광과 그 정광	0	263,664	0	무선전화기	0	170,206	0
(10대 수입소계)			9,814,164		(10대 수출소계)		6,053,904	
공산품 수입합계			13,591,193		공산품 수출합계		9,708,662	

〈한·호주 FTA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양허 단계	우리 양허		호주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주요 품목	품목수
즉시 철폐	승용차, 화물차, 자동차부품 (제동장치, 기어박스 등), 윤활유, LNG, 세탁기, 플라스틱관, 의약품, 비료, 합성고무, 합성수지, 가죽, 가방, 모피, 단판, 직물, 신발, 의류, 냉방기, 냉장고, 시계, 완구류, 직물, 동괴, 타이어	8,577	가솔린중형승용차, 가솔린소형승용차, 디젤화물자동차, 디젤소형, 타이어, 칼라TV, 냉장고, 합성고무, 에어컨, 열연강판, 직물, 가죽, 문구류, 섬유사, 카스테레오	4,551
3년 철폐	밸브, 기타목재류, 의류, 의약품, 접착제, 타일, 안전유리, 타이어	792	디젤중형승용차, 가솔린대형승용차, 디젤대형기타, 가솔린화물자동차, 자동차부품(기어박스, 차체부품, 제동장치, 로드휠, 완충기), 고무벨트, 밸브	107
3A년 철폐	—	—	중고차	8
5년 철폐	원유, 망간철, 알루미늄관, 농약, 단판, 면사, 인조섬유방적사	325	백판지, 도금강판, 필름류, 기타지, 판지, 의류, 양말, 신발, 축전지, 타이어튜브, 안전유리, 기타타이어, 섀시, 석면제품, 계측기, 베어링	414
7년 철폐	시멘트, 밸브, 베어링, 가열난방기 부품, 제재목	85	—	—
8A년 철폐	—	—	양단자, 의류(남성바지, 신사복, 기타복(양상복))	32
10년 철폐	니켈괴, 연괴, 아연괴, 섬유판, 코르크, 건축용목제품, 합판, 목제생활용품,	94	—	—
12년 철폐	기타목재류, 섬유판, 합판	36	—	—
15년 철폐	파티클보드, 일부 섬유판	15	—	—
양허 제외	일부 파티클보드, 합판	7	—	—

2. 농산물

- 호주는 농산물 모든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철폐
 - * 치즈, 양파, 감자, 딸기, 사과, 포도주 등의 품목에 대해 5% 관세 부과 중
- 우리는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주요 품목에 대해서 양허제외, 저율할당관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

【양허제외 및 현행관세유지】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관세와 관련된 협정상의 모든 의무 면제
- 탈·전지분유, 연유, 돼지고기(냉동), 천연꿀, 녹용, 고추, 마늘, 파, 수박, 사과, 감귤, 참깨, 낙화생, 인삼 등(142개 세번)도 추가 개방 없이 현행관세 유지
-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대두(콩나물콩, 기타))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량의 저율할당관세(TRQ) 제공

【농산물세이프가드】

-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 쇠고기, 맥아/맥주맥, 옥수수(기타), 정제설탕 등 5개 품목(12개 세번)

【계절관세】

▣ 우리나라 수확·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 오렌지는 비성수기(4월~9월)에 7년내 철폐, 성수기(10월~3월)에는 TRQ(20톤 → 7년차부터 30톤)를 제공하면서 현행관세 유지
- 포도는 비성수기(12~4월)에 5년 철폐, 성수기(5~11월)에 현행 관세 유지
- 키위는 비성수기(5~10월)에 15년 철폐, 성수기(11~4월)에 현행 관세 유지
- 맨더린은 비성수기(4~9월)에 18년 철폐, 성수기(10~3월)에 현행 관세 유지
- 칩용 감자는 비성수기(12~4월)에 즉시철폐, 성수기(5~11월)에 15년 철폐

【관세감축】

▣ 관세를 부분 감축하여 민감성 보호

- 녹두, 맥아(훈연), 전분(옥수수·감자·고구마), 대두, 사료용근채류 등의 품목에 대해 10년간 기준관세의 50%로 감축
- 여타 402개 민감한 품목에 대해 10년초과 장기 관세철폐

〈 한 · 호주 주요 수출입 농산물 양허 비교 〉

순위	우리 양허 (對호주 주요 수입품)				호주 양허 (對호주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07-09 평균	우리 양허	품목명 (HS 8단위)	관세율 (%)	수출(천불) 12-13 평균	호주 양허
1	사탕수수당 (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3	358,863	0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기타)	5	7,748	0
2	냉동 쇠고기 (뼈 없는 것)	40	277,925	15+ASG	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0	7,338	0
3	제분용 밀(기타)	1.8	263,578	0	기타의파스타	5	5,642	0
4	신선 또는 냉장 쇠고기(뼈 없는 것)	40	163,015	15+ASG	겔렌(담배를 함유 한 것에 한한다) (개피 당 담배 함유량이 0.8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0	4,704	0
5	천일염	1	75,009	0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조제품(기타)	4	3,986	0
6	냉동 쇠고기(갈비)	40	56,709	15+ASG	기타 베이커리제품	5	3,882	0
7	냉동 쇠고기(기타)	40	45,241	15+ASG	소스와 소스용제조품 훈합조미료(기타)	0	3,102	0
8	맥아 (볶지 아니한 것)	269	43,734	15+ASG +TRQ	맥주 (48L를 초과 하지 못하는 개별 용기에 포장된 것에 한한다) (기타)	0	2,858	0
9	소의 냉동 식용실육 (기타)	18	39,590	15	기타 일코올을 함유 하지 않은 음료	5	2,593	0
10	면(섬유길이가 28.5mm이상 34.9mm미만 인 것)	0	27,125	0	버섯과 송로(기타)	5	2,571	0
(10대 수입소계)			1,350,788		(10대 수입소계)		44,421	
농산물 수입합계			1,735,980		농산물 수입합계		77,286	

〈 한·호주 FTA 농산물 양허수준 비교 〉

양허 단계	우리 양허				호주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즉시	254	16.9%	807,964	46.5%	839	100%	77,286	100%
3년	106	7.0%	8,881	0.5%				
5년	181	12.0%	34,796	2.0%				
(5년내)	541	35.9%	851,641	49.1%	839	100%	77,286	100%
7년	122	8.1%	2,708	0.2%				
7년(ASG)	1	0.1%	6,579	0.4%				
10년	262	17.4%	55,106	3.2%				
(10년내)	926	61.5%	916,034	52.8%	839	100%	77,286	100%
12년	7	0.5%	3,134	0.2%				
13년	2	0.1%	4,978	0.3%				
13년 (TRQ)	2	0.1%	15,323	0.9%				
15년	291	19.3%	88,776	5.1%				
15년 (TRQ)	4	0.3%	24,654	1.4%				
15년 (ASG)	8	0.5%	577,879	33.3%				
15년 (TRQ,ASG)	2	0.1%	52,477	3.0%				
세번 분리 (5년, 15년)	1	0.1%	1,184	0.1%				
17년	3	0.2%	0	0.0%				
18년	70	4.7%	240	0.0%				
18년 (TRQ)	4	0.3%	19,635	1.1%				
18년 (ASG)	1	0.1%	107	0.0%				
20년	2	0.1%	5	0.5%				
20년 (TRQ)	5	0.3%	4,058	0.2%				
관세감축	12	0.8%	12	0.0%				
계절관세	3	0.2%	0	0.0%				
계절관세/ 세번 분리	1	0.1%	2,818	0.2%				
계절관세 (TRQ)	1	0.1%	523	0.0%				
현행관세 (TRQ)	2	0.1%	323	0.0%				
양허제외	158	10.5%	23,820	1.4%				
합계	1,505	100%	1,735,980	100%	839	100%	77,286	100%

* 관세감축 : 10년간 기준관세의 50%로 감축

〈 한 · 호주 FTA 농산물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

양허단계	우리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즉시	산동물(돼지, 닭, 산양), 버찌(신선), 아몬드(탈각), 밀(제분용), 메슬린 가루, 야자유, 당밀(기타), 포도주 등	254
3년	아스파라거스, 치커리, 국화, 야자유, 당밀(기타), 조제식료품(오트밀), 마요네스, 생모피, 기타빙과류, 커피의각, 데어리스프레드 등	106
5년	배추 · 완두 · 당근(신선), 옥수수가루, 소시지, 사탕수수당밀(기타), 유자 (조제), 오렌지쥬스(기타), 포도쥬스(기타), 유장(사료용), 밀크알부민 등	181
7년	돼지식용설육, 토마토, 양배추 · 완두 · 살구(신선), 대두유, 면실유, 훈합쥬스, 맥주, 아이스크림 등	122
7년(ASG)	옥수수 기타	1
10년	면양(신냉 · 냉동), 강낭콩, 렌즈콩, 은행(탈각), 망고(신선), 전분(밀), 올리브유, 유채유, 사탕수수당밀(주정용), 돼지고기(냉장), 면양(3)(냉장/냉동-빼있는 것, 없는 것) 등	262
12년	버터기제조제품, 커피크리미 제조용의 것, 카세인글루 등	7
13년	냉동크림 등	2
13년(TRQ)	조제분유, 체더치즈	2
15년	소식용설육(신선/냉장, 족/냉동, 기타/냉동), 장(소의 것), 돼지고기(냉동), 튤립절화, 아바카도, 호박, 감자, 잣(탈각), 매니옥칩(건조), 인삼엑스, 추출올레오레오진(인삼), 유장(기타), 변성유장, 유장분말(기타), 유장기타(훈합분유) 등	291
15년(TRQ)	버터, 버터(기타), 조제분유(기타), 사료용근채류(기타)	4
15년(ASG)	쇠고기(냉장/빼없는 것, 냉동/빼없는 것, 냉동/갈비/빼채절단, 냉동/ 기타/빼채절단 등), 쇠고기(냉장/도체와이분도체, 냉장/갈비/빼채절단, 냉장/기타/빼채절단 등)	8
15년 (TRQ, ASG)	맥주맥, 맥아(볶지않은 것)	2
세번 분리 (5년, 15년)	훈합양념	1
17년	냉동크림(기타), 조제분유(기타) 등	3
18년	닭고기(냉동, 냉장), 영지버섯, 멜론(신선), 레몬, 마늘(냉동), 당근(건조), 옥수수(팝콘용), 밤(냉동), 전분(매니옥) 등	70
18년(TRQ)	치즈(모차렐라, 크림, 가공 등)	4

양허단계	우리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18년(ASG)	정제설탕(기타)	1
20년	밀크와 크림	2
20년(TRQ)	치즈(가우더, 카망베르, 에멘탈, 기타 등)	5
관세감축	녹두, 맥아(훈연), 전분(옥수수·감자·고구마), 대두, 사료용근채류, 이눌린 등	12
계절관세	포도, 키위, 맨더린	3
계절관세/ 세번 분리	감자	1
계절관세/ (TRQ)	오렌지	1
현행관세/ (TRQ)	대두(콩나물용), 대두(기타)	2
양허제외	쌀, 틸전지분유, 연유, 돼지고기(냉동), 천연꿀, 양파(신냉), 녹용, 쪽파(신냉), 고추, 마늘, 파, 수박, 사과, 감귤, 겉보리, 쌀보리, 참깨, 낙화생, 인삼 등	158

3. 수산물

▣ 호주는 수산물 모든 품목(235개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철폐

※ 對호주 주력 수출 품목인 김(4백만불), 참치(75만불) 등에 대해 현행 5% 수준의 관세 부과('13)

▣ 우리는 주요 민감 수산물 43개 품목(품목수 기준 9.7%)에 대하여 장기 관세철폐(10년 초과) 및 양허제외 등의 보호수단을 확보

- 전복(산 것, 신선, 냉장), 뱀장어기타(활어), 명태(냉동), 굴(냉동) 등 4개 품목은 양허제외
- 오징어(냉동), 고등어(냉동), 민어(냉동) 등 여타 39개 민감품목은 10년 초과 장기 관세철폐 기간 설정

- 주요 수입 품목인 참치는 12년(가다랑어)/15년(황다랑어, 눈다랑어, 참다랑어) 관세철폐, 둠은 12년(옥돔)/15년(기타 둠) 관세철폐 기간 설정

※ 2013년도 기준, 참치는 2,850천불, 둠은 194천불 수입

〈 한 · 호주 FTA 수산물 양허수준 비교 〉

양허 단계	우리 양허				호주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즉시	109	24.5%	484	19.8%	235	100%	12,932	100%
3년	121	27.2%	823	33.7%				
5년	58	13.0%	544	22.3%				
(5년내)	288	64.7%	1,852	75.9%	235	100%	12,932	100%
7년	57	12.8%	27	1.1%				
10년	57	12.8%	140	5.7%				
(10년내)	402	90.3%	2,018	82.7%	235	100%	12,932	100%
12년	21	4.7%	0.1	0.0%				
15년	18	4.0%	207	8.5%				
양허 제외	4	0.9%	214	8.8%				
합계	445	100%	2,439	100%	235	100%	12,932	100%

〈한·호주 주요 수출입 수산물 양허 비교〉

순위	우리 양허 (對호주 주요 수입품)				호주 양허 (對호주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07-09 평균	우리 양허	품목명 (HS 8단위)	관세율 (%)	수출(천불) 12-13 평균	호주 양허
1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를 제외한다)	3	504	5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 동물의 생산품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0	2,826	0
2	기타 어류 냉동 피레트	10	477	3	해초류와 기타조류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	2,693	0
3	남방참다랑어 (터너스 맥코이, 냉동)	10	245	3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0	1,819	0
4	기타 뱀장어 (앵글라종, 활어)	27% 또는 1,879원/kg 양자 중 고액	193	E	갑오징어와 오징어 (냉동, 염장, 건조)	0	801	0
5	기타 둠(냉동)	10	142	15	다랑어, 가다랑어 및 버니토우 (사르다종 조제품)	5	760	0
6	상어의 간유와 그 분획물	3	115	0	게(냉동)	0	484	0
7	기타 어란(냉동)	10	87	10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오징어와 오징어	0	400	0
8	기타 패각	8	87	0	기타 건조한 어류 (식용 어류 설육을 제외한 것으로 허제는 제외)	0	394	0
9	진주패각	8	79	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어류(원상 또는 조각에 한함)	0	219	0
10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연체동물, 갑각류 또는 극피 동물의 껌데기와 오징어뼈와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산호, 패각을 제외한다) (10대 수입소계)	8	73	0	기타 어류의 피레트(건조, 염장·염수장)	0	212	0
	수산물 수입합계		2,002		(10대 수출소계)		10,606	
	수산물 수출합계		2,439		수산물 수출합계		12,932	

〈 한·호주 FTA 수산물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

양허단계	우리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즉시	연어(냉장, 냉동, 훈제), 남방참다랑어(냉장), 복어(활어), 틸라피아(활어), 해덕(냉동), 임연수어(냉동), 밀크피쉬(냉동), 어류간(냉동/피레트), 가자미의 것(피레트), 어류의분.조분 펠리트, 캐비아대용물, 진주조개 종류 등	109
3년	닭새우류(냉동), 남방참다랑어(냉동), 넙치류기타(신냉), 다랑어류기타(신냉), 검정대구(신냉), 개아지살(냉동), 김(건조), 굴(밀폐용기), 홍합(밀폐용기), 홍합(자숙) 등	121
5년	새우살(냉동), 바다가재(냉동), 참다랑어(연육), 이빨고기(냉장/냉동), 새꼬리민태(냉동), 봉장어(피레트), 미역(건조), 고등어(밀폐용기), 게살(밀폐용기), 새우(밀폐용기) 등	58
7년	전복(밀폐용기), 열대어(관상용), 돈(냉장), 봉장어(냉장), 정어리(냉동), 연어(염장), 연어(밀폐용기), 다랑어(기름담근것), 붉은대게살, 바다가재(밀폐용기), 골뱅이(훈제) 등	57
10년	연어류기타(냉장), 대구(냉장), 길치(냉장), 전갱이(냉장), 아귀(냉장), 봉장어(냉동), 전갱이(냉동), 상어지느러미(건조), 송어(염장), 고등어(염수장), 홍합(건조), 낙지(냉동) 등	57
12년	가자미(냉동), 검정대구(냉동), 옥돔(냉동), 볼락(냉동), 이빨고기(냉동), 어류기타(냉동), 멸치(건조), 게살(냉동), 대게(산것, 신냉), 굴(건조), 홍합(냉동), 소라(냉동) 등	21
15년	송어(냉동), 넙치(냉동), 넙치류기타(냉동), 황다랑어(냉동), 눈다랑어(냉동), 참다랑어(냉동), 고등어(냉동), 민대구(냉동), 돈기타(냉동), 민어(냉동), 대구(피레트(냉동)), 가자미(피레트(냉동)), 참다랑어(피레트(냉동)), 꽃게(냉동), 갑각류기타(냉동), 오징어(냉동) 등	18
양허제외	전복(산것, 신선, 냉장), 뱃장어기타(앵귈라종(활어)), 명태(냉동), 굴(냉동)	4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개요

- ▣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규정으로 협정문에서는 원산지 일반 기준을, 품목별원산지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에서는 개별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규정
- 원산지 일반 기준으로 (i) 완전생산 기준, (ii) 실질적 변형기준으로서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 등을 규정
 - 그 외 비원산지 재료가 무시할만한 수준인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미소기준 및 역내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누적기준 등 포함
- 품목별원산지기준(PSR)에서는 2012 HS 6단위 5,205개 품목에 대하여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있는 특정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원산지로 인정
- ▣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정이 FTA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그 예외로 역외가공지역을 규정
 - 역외가공위원회 규정을 통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틀 마련
- ▣ 원산지 절차는 원산지 증명 방식, 특혜관세 신청 절차 및 원산지 검증 방식 등에 대하여 규정

- 수출자의 편의를 위해 원칙적으로 원산지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하되, 호주의 경우 기관증명방식^{*}을 병행하는 방안 도입

*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

-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원산지 직접 검증시 수출당사국은 옵저버로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상세내용

1. 완전 생산기준(제32조)

- 양국 영역에서 나오고 자란(born and raised) 산동물, 양국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grown and harvested) 식물 등을 완전생산물품으로 정의
- EEZ에서 어획한 수산물의 경우 기국주의 원칙 적용(당사국에 등록·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의 국적을 따름)

2.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실질적 변형(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이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로 인정
- (세번변경기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함에 있어 일정한 세번 변경을 거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세번변경기준은 HS 2단위 변경기준(CC)이 가장 엄격하며, 4단위 변경기준(CTH) 및 6단위 변경기준(CTS)은 완화된 기준
예) 원유(HS2709)를 수입하여 석유(HS2710)를 생산할 경우 4단위 세번 변경

- (부가가치기준) 생산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역내가치를 충족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3. 역내가치비율(RVC : Regional Value Content) 계산방법 (제33조)

- 원산지 판정을 위한 역내가치비율 계산은 (i) 공제법(비원산지재료 가치를 제외하는 방법) (ii) 집적법(원산지 재료 가치를 누적하는 방법)으로 규정 가능

※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공제법 또는 집적법 중 선택적 사용 가능

4. 누적기준 (제35조)

- FTA 상대국과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타 당사국의 상품이 당사국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상품에 결합이 일어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어느 한쪽 또는 양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5. 미소기준(de minimis) (제36조)

- 비원산지 재료가 해당 품목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치가 상품 가치의 10%이하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미소기준은 원산지기준 판정의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 FTA에 반영되어 있음.

- 단, 비원산지재료가 상품과 다른 소호(HS 6단위)로 분류되지 않는 한, 제1류-14류(신선농산물)에 대하여는 미소기준을 배제
- 일부 세번*에 대해서는 미소기준 적용을 완전 배제

* 0301-0303, 0305-0308, 0701-0710.10, 0713-0714, 0801-0810, 0813.10-0813.40

- 제50류-제63류(섬유 및 의류) 대해서는 모든 비원산지 섬유 또는 원사의 총중량이 상품 중량의 10%이하로 사용되는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6.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제37조)

- 대체 사용 가능한 재료 및 물품의 원산지 판정 특례를 인정

- 대체 사용가능한 재료 및 물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편의 증진을 위해 재고관리 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

※ 물품의 특성, 기능, 구조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물품 또는 재료

7. 간접 재료 (제3.11조)

- 제품 생산시 사용되었으나, 최종 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지 않은 연료, 도구, 예비부품, 윤활제, 안전장비 등의 간접재료는 원산지로 취급

8. 직접 운송 (제3.14조)

-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로 인정
 - 단,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①제3국에서 운송상 이유로 하역·분할, 재선적 또는 물품상태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 이상의 추가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②양 당사국 영역 밖에서 관세 당국의 통제 하에 있을 경우에는 원산지 인정

9.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제3.13조)

-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조항을 도입(부속서 3-나)
 - 협정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회의 개최, △이후 연 2회 회의개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 대상임을 각주로 명시

-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외가공지역 상품의 원산지 상품 인정 전 충족 기준(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의 영향, 환경 및 노동 기준 및 관행 등)은 미도입

10. 품목별 원산기준 (PSR)

-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생산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농수산물에 대한 우리측 민감성을 반영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
- (자동차) 승용차는 “CTH+부가가치(집적법 30% 또는 공제법 40%)”기준을, 그 외 완성차는 “CTH+부가가치 40%(집적법 또는 공제법)”을, 자동차 부품은 더욱 완화된 “부가가치(집적법 30% 또는 공제법 40%)”과 “CTSH 또는 부가가치 40%(집적법 또는 공제법)”기준 규정
- (기계·전자기기) 대부분 6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도입하면서, 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 40%(집적법 또는 공제법) 기준 적용
- (철강 및 철강제품) 철강은 대부분 4단위 변경 기준을, 철강 제품도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되, 일부 품목의 경우 부가가치 40%(집적법 또는 공제법)에 합의
- (섬유 및 의류) 수입산 섬유(fiber) 또는 사(yarn)를 사용하여 사(yarn) 또는 직물(fabric)을 만들더라도 원산지로 인정하고 수입산 직물을 염색·날염하여도 원산지로 인정(섬유, 사는 CTH, 직물은 CTH 또는 염색·날염 공정)

- (농수산물) 육류의 경우 도축기준 불인정, 수산물·곡물 등 우리측이 민감한 신선 농수산물 대부분에 대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완전생산)으로 하되, 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완화된 원산지 기준에 합의
 - 제1~12류는 대체로 완전생산기준(WO) 또는 그와 유사한 세번변경 기준(특정 챕터를 제외한 CC)으로 규정하여 엄격한 기준 유지

11. 원산지 증명 방식 (제3.15조, 제3.16조)

- 원산지 증명은 원칙적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되,
- 호주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신청에 의해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방식을 병행
-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증명서의 서명일로부터 2년(또는 수입 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이고, 협정문 부속서3-라의 원산지 증명서 표준 서식을 이용하여 발급 가능
- 원산지 증명서는 단일 선적 이외도, 원산지 유효기간내 상품의 복수 선적에도 적용 가능

12. 특혜관세 신청절차 기타 사항 (제3.18조~제3.20조, 제3.22조)

-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

- 수입통관 후 1년 또는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까지 사후 환급 신청 가능
- 수출자, 수입자 등은 원산지 증명서 및 여타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면제
 - 우리의 경우 미화 1,000불 이하, 호주의 경우 1,000 호주 달러 이하
- 원산지 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무효화 할 수 없도록 규정

13. 원산지 검증 (verification) (제323조-제324조)

-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 서면 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통해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직접 검증 방식 도입
 - 세관당국은 방문조사 전에 방문검증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 동의를 얻어 검증 실시
 - 수입국의 세관당국은 방문조사시 수출국의 세관당국에게 통지 해야 하고, 수출국 세관당국의 공무원은 옵저버로서 참여 가능

4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 개요

-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분야는 상품 수출입 과정에 수반되는 통관 절차와 관세협력 관련 내용을 규정
- 관세법령 공표, 사전판정, 불복절차 규정 등을 통해 세관행정의 투명성 증대 및 무역원활화를 도모

◆ 상세 내용

1. 관세행정의 투명성 증대 (제42조)

- 관세행정 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관세법령 및 관세행정 절차의 인터넷상 공표를 의무화
- 이해관계인의 관세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안내창구(enquiry point) 운영 의무

2.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제4.6조)

- 신속한 물품반출을 통한 양국 간 교역 촉진을 위하여 당사국의 간소화된 통관절차 유지 의무 규정
 - 상품 도착전 사전신고 및 부두직통관 제도 등을 규정하고, 긴급 물품에 대한 24시간 통관시스템 적용·유지 노력 등

3. 사전판정 및 불복청구 절차(제4.7조-제4.8조)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의 서면 신청에 의해 수입국 관세당국이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등을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판정 제도 규정
- 관세사안에 대한 결정에 대해 수입자에게 불복청구권을 보장
 -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서명·신청하거나,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인에게도 불복청구권을 보장
 - 수출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수입국 행정심판 당국에 소명 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4. 관세협력 및 위원회(제4.9조, 제4.12조)

- 통관 기술·절차 개선 조치 등에 관한 양국 전문성을 교환하는 등 상품 교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세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

-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한 지정된 연락처 (contact point) 목록을 상호 교환하기로 함
- ▣ 원산지,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관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위원회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and Trade Facilitation) 설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 개요

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 ▣ WTO TBT 협정을 근간으로 상대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양국 간 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절차와 방안을 규정
-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절차의 제·개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
- 양국 간 기술규정, 표준 등에 대한 정보교환과 관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

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 ▣ 양국은 기존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의 이행에 관한 자국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
- ▣ 또한 기술협의회*도 개최하여 상호 이행을 검토하고 이해를 증진하는 한편, 협력을 통한 상호 지식과 경험의 공유도 도모

* 기술협의회의 기능 : 이행 검토 및 점검, SPS 조치 및 관련 규제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등

◆ 상세 내용

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1. TBT 협정의 재확인 (제52조)

-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존 TBT협정*상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

* TBT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2.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 (제53조)

- WTO TBT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국의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은 국제표준, 지침, 권고 등에 기반
- 국제표준의 존재 여부 판단은 WTO TBT 위원회가 채택한 국제 표준 개발원칙에 근거

※ WTO의 TBT 위원회는 국제표준의 개발원칙으로서 합의성, 공정성, 공개성, 통일성, 시장적합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사항을 채택(G/TBT/Rev.9, Part 1의 Annex B, 2008.9월)

3. 기술규정 (제54조)

- 상대국 기술규정이 자국 규정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자국 규정의 목적을 충족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상대국 규정 수용을 긍정적으로 고려

- 상대국 규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그 사유를 설명

* WTO TBT협정(제2조제7항)에서도 유사한 규정 존재

4. 표시 및 라벨링(제55조)

- 양국은 상품에 대한 표시 또는 라벨 부착에 관한 규정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로 합의
- 라벨에 대해 특정(자국) 언어로 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동일한 정보를 다른 언어로 병기하는 것도 허용
- 비영구적·탈착 가능한 라벨과 상품에 동반된 서류상 라벨도 허용

5. 적합성 평가절차(제56조)

- 양국은 상대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 위해 협의* 가능
- 양국은 적합성 평가절차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타방 당사국의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요청에 따라 그 이유를 설명
- * 협의 대상 예시 : ① 특정 기술규정에 대하여 타방 당사국 소개 기관의 수행 결과를 수용, ② 타방 당사국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 ③ 타방 당사국 소재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 등
- 또한, 타방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인정하기 위한 협정을 협상하는데 있어서 타방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

6. 공동 협력 (제5.7조)

- 관련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상대국 시장 접근의 촉진을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등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
- 특히, 특정 분야의 표준 및 기술규정 등에 관한 무역촉진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증진하는데 노력

* 무역촉진 이니셔티브의 예 : 투명성, 모범규제관행의 증진, 국제표준화의 조화 등

7. 투명성 (제5.8조)

- 양국은 자국민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상대국 국민이 표준 및 기술규정 등의 개발에 참여하도록 허용
 - WTO TBT 협정에 따라 제·개정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안)를 WTO에 통보할 때, 동시에 상대국에도 통보
 - 상대국에 통보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안)에 대해 최소 60일의 서면의견 제출기간 부여
 - 당사국은 제출된 중요한 의견에 대한 회신 또는 그 요약본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공표
- * 60일 기간(WTO TBT 권고사항) 확보를 통해 양국간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개정 과정에서 의견제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미 FTA, 한·EU FTA에도 가규정)
- * 우리나라 TBT 통합포털정보사이트(www.knowtbt.kr)에서 TBT관련 제반 정보제공

-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제·개정시, 상대국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정 목적, 정당성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상품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기술규정이 채택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통상마찰의 사전 예방효과 등 기대

8. 조정 메커니즘(제5.9조)

- 동 챕터의 이행 감독, 양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TBT 문제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양국 간 TBT 조정자(Coordinator) 설치
 - ※ TBT 조정자 운영기관 : 우리측 국가기술표준원 및 호주측 산업부

9. 분쟁해결(제5.11조)

- 제5장 제1절(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FTA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함

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1. 적용범위(제5.13조)

- 제5장 제2절(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규정은 양국 간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에 적용

2. WTO SPS 협정의 확인 (제5.14조)

-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의 적용에 관한 협정 상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

3. 기술협의회 (제5.16조)

- 양국은 서로 합의하는 시간, 장소에서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참여하여 SPS 사안에 대한 기술 협의회*를 개최

* 기술협의회의 기능 : ① 이행 검토 및 점검, ② SPS 조치 및 관련 규제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③ 협력 활동, ④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검토, ⑤ 기술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

4. 협력 (제5.17조)

- 양국은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WTO SPS 협정상 의무를 이행

* 협력 분야 : ① 식품안전과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과 관련된 국제기구에서의 의견 교환을 포함한 협력, ② 각국의 SPS조치에 대한 정보의 교환 촉진, ③ 지식 및 경험 공유

5. 분쟁해결 (제5.18조)

- 제5장 제2절(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FTA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함

무역구제

◆ 개요

- FTA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해 수입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양자 세이프가드를 도입
-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자세이프가드 이외에 우리측만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Agricultural Safeguard) 조치를 도입
- 무역구제조치 발동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WTO 협정문보다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상세 내용

1. 세이프 가드 (제1절)

【양자 세이프가드】

-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결과,

동종 및 직접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정지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 수준까지 관세인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 원칙적으로 관세철폐 종료후 5년 동안 발동 가능
- 발동기간은 2년이며, 1년간 연장 가능(연장기간을 포함하여 3년이 최대한도)
- 산업피해의 실질적인 원인(substantial cause)일 경우에만 발동 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 강화, 동일 상품에 대한 재발동 전면 금지, 보상·보복 규정을 도입하여 FTA 무역자유화 취지에 역행하는 양자 세이프가드 남용을 방지

【다자 세이프가드】

- WTO 협정에 따른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 권한을 보유하되, 동일한 상품에 대해 양자 세이프가드와 다자 세이프가드의 동시 발동은 금지
-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대국의 수출품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상대국 수출품을 발동 대상에서 재량적으로 면제 가능

2. 농산물 세이프 가드(제2절)

- 우리는 부속서 6-가에 규정된 일부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 설정된 물량(trigger level)을 초과하여 수입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형태의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발동 가능

※ ASG 발동 가능 품목 : 쇠고기, 맥아/맥주맥, 옥수수(기타), 설탕 등 5개 품목 (12개 세번)

- 단,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을 통해 인상되는 관세율은 최혜국 (MFN) 실행관세율 초과 불가
- 농산물 세이프가드와 ① 한-호주 FTA에 따른 양자 세이프가드, ② WTO 협정에 의한 다자 세이프가드, 또는 ③ WTO 농업협정에 따른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는 동시 발동 불가

3. 반덤핑 및 상계 조치 (제3절)

- 양국간 제로잉을 금지하는 관행을 확인하고, 이러한 관행이 계속 될 것이라는 기대를 공유한다는 규정 도입
 - ※ 제로잉(Zeroing) 금지 : 반덤핑마진 계산시 양 또는 음의 값에 상관없이 모든 개별마진을 평균 계산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음의 마진을 임의로 누락하여 총 덤플링마진이 높게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
- 덤플링 마진이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을 경우,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을 통상적으로 적용
 - ※ WTO 반덤핑협정상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은 바람직한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사항(WTO 반덤핑협정 제9.1조)
- 조사개시 이전에 상대국에게 서면통보하고, 반덤핑의 경우 조사개시 직후, 상계관세의 경우 그 이전에 협의 기회 부여
 - ※ WTO 반덤핑 협정은 조사개시 전 통보의무만 규정(WTO 반덤핑협정 제5.5조)

-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수입국의 조사당국이 덤플 또는 보조금 및 이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수출자에게 약속의 이용가능성을 알려주고, 약속 제안이 있을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고려할 의무 부과

※ 약속(Under takings) : 수출자의 자발적인 가격인상 또는 수출물량제한에 관한 약속 제의가 조사당국에 의해 수락될 경우, 관세부과 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는 제도

- 이 제도는 수출자에게 유리한 문제 해결 방식이며,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 받지 않고 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

국경 간 서비스 무역

◆ 개요

▣ 협정문의 적용범위 (제7.1조)

- 양국 간 서비스 무역(cross-border trade in services)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모든 조치
 - 단, 사행성 게임을 포함한 도박·베팅서비스, 금융서비스, 정부조달, 정부보조금, 항공운송서비스, 정부제공서비스 등은 제외
- ※ 도박·베팅서비스 관련 예외는 부속서한(side letter)에 명시
- ※ 금융서비스 및 정부조달은 별도 챕터에서 논의

▣ 협정문상의 주요 의무

-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시장접근(MA) 제한조치 도입금지, 현지주재(LP) 의무 부과 금지가 있으며, 그 외 투명성 제고, 자격상호인정, 지불 및 송금 등을 규율

▣ 서비스/투자 통합유보

-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하여, 투자 챕터와 서비스 챕터의 주요의무*에 위배되는 현존 및 미래의 비합치 조치를 부속서에 유보목록으로 명시

- ※ 투자 챕터 :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이행요건(PR) 부과금지,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MBD) 국적요건 부과 금지
- ※ 서비스 챕터 :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시장접근(MA) 제한 금지, 현지주재(LP) 의무 부과 금지
- 한국과 호주 양국은 각각 미국과 체결한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시장 개방
- 호주의 주정부 비합치 조치도 현재유보에 기재하여 자유화후퇴 방지 메커니즘이 적용 (모든 주정부 비합치 조치를 나열)
- 한편, 우리의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 및 호주의 기초 지자체의 현존 비합치 조치에 대해서는 상기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상호 허용

◆ 상세 내용

1. 일반적 의무

-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제7.2조)
 -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 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 최혜국 대우(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제7.3조)
 - 동종의 상황에서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 단, 양국은 한호주 FTA 발효 이후 서명되는 협정에 대해 MFN 대우를 부여하기로 합의(미래 MFN)하였으며,

- 일부 분야는 미래에 체결하는 협정에 의한 MFN 대우도 제외
 - 우리측은 1) 항공, 2) 수산, 3) 해운, 4) 위성방송, 5) 철도, 6)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등에 대한 MFN 대우를 배제
 - 호주측은 1) 항공, 2) 수산, 3) 해운 등에 대한 MFN 대우를 배제
- ※ 상기와 별도로 여타 분야에서도 MFN 대우가 배제되는 특정 조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유보에 명시

□ 시장접근(Market Access) (제7.4조)

- ①서비스 공급자의 수 제한, ②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제한, ③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 총 산출량의 제한, ④고용인의 총수 제한, ⑤사업자의 법적 형태(법인, 합작투자 등)를 제한하는 규제 도입 금지

□ 현지주재(Local Presence) (제7.5조)

-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구비 혹은 거주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
 - ※ 상기 일반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상기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보목록에 명시
 - ※ 한·호 FTA의 서비스 분야는 현재유보(Annex I) 또는 미래유보(Annex II)에 기재되지 않은 분야는 상기 4대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Negative 방식)

참고 : 유보의 종류

- ① 현재유보(Annex I) :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이 적용됨
 - *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 :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 (예) 외국인투자 현행 제한이 30%일 경우, 그 이하인 20%로 하향조정하거나, 30%를 40%로 상향조정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40% 미만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② 미래유보(Annex II) :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

* 그러나, 상기 4대 의무와 무관한 비차별적인 규제(예: 면허, 허가 인가요건 등)는 “국내 규제”조항에 의거, 국내정책 결정에 따라 자유로이 유지·신설·개정할 수 있음

2. 국내규제(제7.7조)

- 서비스공급과 관련 적법한 신청에 대해, 권한있는 당국은 신청인에게 합리적 기간 내에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할 의무 (부속서 II 유보사항은 제외)
-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면허 요건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할 의무

3. 투명성(제7.8조)

- 서비스 관계 법규의 입법·개정 추진시 합리적인 사전예고 기간을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립·유지할 의무

4. 자격상호인정(제7.9조)

- 특정 국가 또는 비당사국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자격·면허를 인정할 수 있으며, 당사국에게는 이와 같은 상호인정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의무와 자격 상호인정 현황에 대해 정보 교환의 의무 규정

- ▣ 동 조항 관련 부속서를 통해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Working Group on Professional Services)을 구성, 양국이 상호 합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

※ 우선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보건의료, 회계 등 5개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양측이 합의하는 분야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함

5. 지불 및 송금의 자유 (제7.10조)

- ▣ 국경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모든 송금과 지불이 국내외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허용

※ 송금이나 지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사유 : ①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②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및 취급, ③법 집행이나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의 기록 또는 보고, ④형사범죄, ⑤사법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명령이나 판결의 준수를 보장

6. 혜택의 부인 (제7.11조)

- ▣ ①제3국인이 소유하고 혜택부인 당사국이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기업, ②제3국인이 소유하고 타당사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타당사국 기업(이른바 paper company)에게는 협정 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

7. 시청각 공동제작 (부속서 7-4)

- ▣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 시청각 공동제작 촉진을 위해 양국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동 챕터의 부속서로 포함

- 동 협정에 따른 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우리 시청각제작물의 호주 진출 지원에 긍정적 효과 기대

8. 서비스 · 투자 통합유보 (부속서 I, II)

- 서비스 교역확대를 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적 서비스 등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개방 추진
 - ※ 우리측 유보 개수 : 총 94개 (현재유보 47개, 미래유보 47개)
 - ※ 호측 유보 개수 : 총 53개 (현재유보 31개, 미래유보 22개)

【투자 관련 주요 유보】

- 공공질서 확보를 위한 외국인투자 규제 가능
 - 공공질서(public order)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NT) 및 이행요건(PR) 의무에 반하는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보를 기재하여 이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보
- 정부권한 행사 서비스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제한
 - 정부권한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래유보 기재
 - ※ 법집행, 교정서비스 등 정부가 비경쟁적, 비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단, 우리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동 유보 적용 제외

【서비스 관련 주요 유보】

□ 교육 · 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포괄유보

- 공교육(유 · 초 · 중 · 고) · 의료 및 사회서비스, 수도 · 전기 · 가스 · 생활환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미래유보

- 다만, 고등교육(대학교) 및 성인교육 분야의 경우 현행 관련법령의 수준에서 개방하고, 원격교육은 비학위 성인교육에 한하여 개방
- 전기 · 가스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및 산업환경서비스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수준 유지(현재유보)

□ 전문직서비스(법률 · 회계 · 세무)의 단계적 개방

- 호주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호주 법률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

※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 필요

- 법률서비스는 3단계, 회계 · 세무 서비스는 2단계로 개방 추진

참고 : 전문직서비스 단계적 개방 주요내용

〈법률〉

- 1단계(발효) : 외국법 및 국제공법 자문 허용, 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 2단계(발효 후 2년내) :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 허용
- 3단계(발효 후 5년내) :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간 합작 및 동 사업체의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회계 · 세무〉

- 1단계(발효) : 외국회계 · 세무 자문 허용, 외국 회계 · 세무법인의 사무소 개설 허용
- 2단계(발효 후 5년내) : 국내 회계 · 세무법인에 대한 외국 회계사 · 세무사의 출자 허용

▣ 방송서비스

- 현행 법규보다 강화된 제한을 적용하는 한편, 현재유보에서 기재한 제한사항 이외의 모든 사항을 포괄 미래유보 함으로서 향후 자율적 규제권한 확보

〈 참고 : 방송서비스 분야 주요 제한사항(현재유보) 〉

제한사항	한·호 FTA	현행 방송법
외국인의 종편PP 및 중계유선 소유 제한	소유 금지	20%까지 허용 (제14조 제2항)
외국인의 보도PP 소유 제한	소유 금지	10%까지 허용 (제14조 제2항)
외국인의 위성방송 소유 제한	33%까지 허용	49%까지 허용 (제14조 제3항)
1인의 지상파, 종편·보도PP 소유 제한	30%까지 허용	40%까지 허용 (제8조 제2항)

▣ 통신서비스

-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 49% 유지
- 협정 발효 후 2년 내,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하되, 국내 핵심기간망을 보유한 KT·SKT는 제외
- 공익성심사(public interest test)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만 간접투자를 허용

▣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 가입자 기반 비디오 서비스(예: IPTV) 분야를 미래유보함으로써 자율적 규제권한 확보

* **가입자 기반 비디오 서비스** : 당해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 포함)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IPTV)과 양방향 방송 포함

-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타입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및 기타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단, 방송서비스와 가입자기반비디오서비스는 제외)

▣ 문화 관련 서비스

- 문화유산 및 문화재 보존 · 복구 관련 서비스

–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발굴 · 평가 · 매매 등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보존 · 복원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포괄유보(미래유보)

- 정기간행물의 출판 · 유통 서비스

– 여론형성 기능이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포괄유보(미래유보)
 – 신문을 제외한 여타 정기간행물의 경우 ①외국정부 및 외국인, ②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기업, ③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은 발행할 수 없으며, 호주 본사에서 편집된 원어로 된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국내 지사 · 지국이 이를 인쇄 · 배포 가능

▣ 기타 서비스

- 농축산물 유통 및 저장·창고 서비스

– 농축산물의 국내 민감성을 반영, 위탁증개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가공 농산물, 산동물 및 식음료에 대해, 도매 서비스 분야에서는 곡물, 육류, 가금, 곡분, 홍삼 및 비료에 대해, 소매 서비스 분야에서는 쌀, 인삼, 홍삼에 대해 미래유보

- 저장·창고 서비스 관련 농축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미래유보

- 부동산 서비스

- 이미 대외개방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분야는 현재유보 기재를 통해 현행 개방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여타 분야(개발, 임대, 관리, 공급)에 대해서는 미래유보

- 육상·철도·해상운송 서비스

- 국민생활과 직결된 여객 육상운송(시내·시외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하여 추후 국가 경제의 고도화에 따른 대중교통 체계의 구조개편 가능성에 대비

- 화물 육상운송도 정부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하여 화물 운송 시장의 공급 과잉시 제반조치 도입 권한 확보

- 철도운송 관련, 한·미 FTA 등 기체결 FTA와 마찬가지로 기존 ('05.6.30일 이전)에 운영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외국에 개방하지 않음

※ '05.7.1일 이후 노선에 대해서는 경제적수요심사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

- 해상운송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여객운송 및 연안해운 서비스를, 호주는 연안해운 및 근해운송서비스를 미래유보

금융서비스

◆ 개요

▣ 금융협정이 적용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제8.1조 1항)

- 금융협정은 ① 상대국의 금융기관, ② 자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 및 투자자 그리고 ③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당사국의 법령, 관행 등에 대해 적용

▣ 금융협정이 적용 배제되는 경우 (제8.1조 3항)

- 공공퇴직연금제도(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및 법정사회 보장제도(예: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 중앙은행(예: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통화관련 국가기관(예: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및 국가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금융기관(예: 수출입은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 상세 내용

1. 신금융서비스의 조건 (제86조)

※ 신금융서비스 : 상대국에서는 허용·거래되고 있으나, 아직 자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

▣ 신금융서비스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허용

- ① 당사국의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을 것, ② 추가적 입법행위 없이 신금융서비스가 당사국 국내법상 허용될 것, ③ 해당 상대국의 금융기관이 당사국에 상업적으로 주재할 것

2. 금융건전성 제도의 도입 가능성(제8.10조)

▣ 각 국가가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건전성제도는 언제라도 도입 가능

-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기관 등의 건전성 제고, 금융제도의 무결성·안전성 보장 등을 위한 제도를 포함하는 건전성 목적 조치
- 예금주, 주주, 금융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제도
-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3. 단기 세이프가드(제8.10조, 부속서 11-대)

▣ ‘단기 세이프가드’는 다음의 경우 발동할 수 있음

- 심각한 국제수지 또는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 양 당사국 간 지급 및 자본 이동이 해당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단기 세이프가드는 다음의 조건을 따라야 함

① 발동기간이 1년 이내일 것

※ 단, 필요시 협의 거쳐 연장 가능

② IMF 규정과 합치할 것

③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 초래를 피하고, 필요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며, 경제여건 개선시 해제할 것

④ 몰수적이지(confiscatory) 않을 것

⑤ 상대국가에 신속하게 통지할 것

⑥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의무

⑦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금지

⑧ 경상거래의 경우, IMF상 절차에 따름

⑨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 송금에는 단기 세이프가드 미 적용

4. 국경 간 금융서비스의 개방범위 (부속서 8-기)

▣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란 호주(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우리나라

(호주)에 지점·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양국은 (1) 국제거래에 관련된 보험서비스*와 (2) 금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수서비스**에 한정하여 개방하기로 합의

* 예) 해상, 상업적 항공, 수출입적하보험 등

** 예) 보험계리, 손해사정, 투자자문, 기업구조조정자문 등

〈 양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개방범위 〉

분 야		우리나라	호 주
보험	(1) 해상·항공·우주보험	○	○
	(2) 수출입적하보험	○	○
	(3) 재보험	○	○
	(4) 보험 증개·대리	(1)~(3) 관련 보험에 한정	(1)~(3) 관련 보험에 한정
	(5) 보험부수서비스*	○	○
은행 기타 금융	(1) 금융정보 제공	○	○
	(2) 금융정보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	2년 후 개방	즉시 개방
	(3) 은행 기타 금융 부수 서비스**	신용평가, 신용조회· 조사 서비스 제외	전면 개방

* 보험자문서비스, 보험계리서비스, 위험평가서비스, 손해사정서비스 등

**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자문, 인수·구조조정·전략수립 자문 등

5. 국책금융기관의 취급 (부속서 8-나 제4절, 부속서 Ⅲ)

- 국책금융기관을 협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거나 그에 대한 현재의 특별 대우를 유보목록에서 기재
 - 한·호 FTA 적용이 배제되는 국책금융기관
 -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우정사업본부
 - 한·호 FTA는 적용되나 내국민대우에 대해 유보하여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는 국책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

6. 포트폴리오 운용서비스의 역외제공 (부속서 8-나 제7절)

- 포트폴리오 운용의 해외위탁 문제는 당사국의 투자펀드 자산을 해외에 있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할 수 있게 위탁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임.
 - 우리나라 현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외화표시자산의 경우 해외 운용위탁을 허용
 - 원화표시자산의 경우 현행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위탁가능
- * 국내에서 설립된 펀드로서 원화로 표시된 자산(국내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원화자산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외화로 표시된 자산(호주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외화자산 포트폴리오라 함.

7.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및 소비자 보호 (부속서 8-나 제1절)

- ▣ 금융정보 처리의 해외 위탁을 발효 2년 후부터 허용하도록 규정
 - 한편,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을 허용한다고 하여 금융정보의 생성·저장을 위한 IT설비, 금융 전산망 등 본질적 요소들의 해외이전 까지도 허용하는 것은 아님.
- ▣ 또, 아래와 같은 일정 조건하에서 유예기간(한·호 FTA 발효 후 2년 이내)을 두고 개방
 - ① 소비자 민감 정보 보호
 - ② 위탁받은 금융정보의 재판매를 포함한 재사용 금지
 - ③ 해당 위탁 금융기관의 기록에 접근할 우리 금융 당국의 권한 확보
 - ④ 적정한 수준의 전산시설 유지 등의 조건은 명문화

8. 금융서비스 관련 주요 유보 (부속서 III)

* 금융서비스 관련 유보내용은 현행 관련 법령내용 수준으로 반영

- ▣ 방카슈랑스 판매방법의 제한 유보
 - 은행의 방카슈랑스 영업 관련, 영업직원의 수, 동일 보험회사 상품의 판매비율 제한 등을 유보함.
- ▣ 국내 은행 지분소유 제한

- 국제적으로 신용력 있는 은행만 10% 이상의 국내 은행 지분 취득이 가능하도록 유보함.
- 외국은행 지점의 개별인가
 -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신설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
- 증권·선물시장의 설립 및 운용기관 제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한해 증권·선물시장의 설립 및 운용 가능
- 한국거래소·증권예탁원을 상장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제한
 - 미래에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또는 증권예탁원을 상장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지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보

통 신

◆ 개요

- ▣ 통신 서비스는 그 자체가 서비스 교역활동이면서 동시에 다른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수단
 - 이에 따라, 통신 서비스 자유화 관련 사항은 서비스 장(章)에서 다루고, 통신 장(章)은 경제활동의 토대로서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서비스 교역의 토대가 되는 통신 서비스 관련, 상대국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상세 내용

1. 협정 적용범위 [제9.1조]

- ▣ 통신 서비스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적용
 - 방송서비스에 관한 조치는 적용 배제

2.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제93조)

- ▣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상대국 사업자가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명시
- ▣ 단, 당사국은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또는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국 사업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해 일정한 조건 부여 가능
 - 통신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 접속을 위해 특정한 기술적 인터페이스 사용요건, 통신서비스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요건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

3. 지배적 공중통신 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 (제3절)

- ▣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지배적 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당사국이 보장 또는 적절한 조치를 유지
 - ※ 지배적 사업자(major suppliers): 필수설비에 대한 통제력 또는 시장 지위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시내통화의 KT나 이동통신의 SKT가 해당
 -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지배적 사업자 그 자신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 등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사업자에게 부여 (제9.5조)
 - 교차보조 행위 등 반경쟁적인 행위 금지 (제9.6조)

※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통해 획득한 초과이윤을 경쟁적인 다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자회사·계열사 등에게 보조하는 행위

- 상대국의 사업자에게 재판매 제공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 (제9.7조)

※ 재판매(resale): 지배적 공중통신사업자가 자사 소유의 전기통신회선 설비 또는 통신서비스를 여타 군소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 상호접속을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망의 모든 지점에서 비차별적이고 시의적절한 조건(기술표준·규격 등)으로 제공 (제9.9조)

-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절차를 공개하고,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표준 상호접속 제안을 공개하도록 보장

4. 그 밖의 조치(제4절)

-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 의무 부과 금지 (제9.14조)
 - 대중에 대한 일반적 공급, 서비스 요율의 비용상 정당화, 서비스 요율표 제출, 자사 망의 특정 고객과 연결, 공중통신망 이외의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해 통신규제기관의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 준수
 - 단, 반경쟁적 부가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기 조치 가능

※ 부가서비스: 통신망에서 기본적인 서비스에 추가하여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일례로, 날씨·관광 음성 정보 제공 서비스 등

▣ (규제기관의 독립성) 통신규제기관이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독립성을 갖추도록 보장하고, 동 규제기관의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보장 (제9.15조)

▣ (보편적 서비스) 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그 보편적 서비스의 종류는 당사국이 규정할 권한 보유 (제9.16조)

※ 보편적 서비스 의무(universal service obligation): 산간 오지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

▣ (허가절차) 공정하고 투명한 통신사업 허가절차 보장 (제9.17조)

▣ (희소자원의 분배) 주파수, 번호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시행 (제9.18조)

※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조치는 시장 접근 제한 조치로 간주되지 않으며, 당사국은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정책 수립 권한 보유

▣ (통신 분쟁해결) 협정문상 규정된 사안에 대한 통신규제기관의 조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구제 신청, 사법적 재심 요청 가능 (제9.20조)

▣ (투명성) 통신규제기관의 결정 및 규정 제정 관련 의견 수렴 등에 있어서 투명성 보장 (제9.21조)

자연인의 이동

◆ 개요

- ▣ 양국간 교역 증진의 일환으로 양국의 출입국조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국 자연인에 대한 입국 허용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서, 이민·구직행위 등은 불포함
- ▣ 적용범위, 일시입국의 허용, 분쟁해결, 투명성 등 총 8개의 조항과 1개의 부속서(Annex) 및 1개의 부록(Appendix)으로 구성
 - 우리나라의 호주의 상용방문자, 기업내전근자, 무역업자 및 투자자, 계약서비스공급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에 대해 약속
 - 부록에서는 계약서비스공급자의 양허직종을 나열(부록 10-가-1)

◆ 상세 내용

1. 협정문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 (제10.1조)

- ▣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의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 관련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동 협정의 범주에 시민권, 영구적 차원의 거주 또는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나. 일시입국의 허용 (제10.3조)

- 각 당사국은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자연인이 당사국의 적용가능한 관련 법과 규정, 그에 따라 취해진 조치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할 경우 일시입국을 허용함을 명시
- 부속서 10-가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발급될 비자의 총 수에 대한 제한을 부과·유지하지 아니함

다. 분쟁 해결 (제10.6조)

- 양 당사국은 자연인의 이동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할 것을 합의
- 다만, 이 챕터에 따른 일시입국 허용 거절에 관해, ① 그 사항이 반복된 관행(pattern of practice)과 관련이 있고, ② 해당 당사국의 자연인이 가능한 모든 행정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만 이 협정의 분쟁해결규정(제20장)에 의한 절차 적용 가능

라. 투명성 (제10.7조)

- 협정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챕터에 따른 일시입국의 요건에 관한 설명자료를 작성,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하여야 함

마. 노동분쟁 관련자의 일시입국 거부 (부속서 10-가 제1절 2항)

- ▣ 자연인이 진행중인 노동분쟁에 연관되고 그러한 노동분쟁의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일시 입국의 허용 거부 가능

2. 일시입국 대상자 구분 및 입국허용 기준 (부속서 10-가)

구 분	내 용
상용 방문자 (Business Visi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판매자로서 서비스 판매를 협상·계약 체결 목적으로 한국 영역에 입국하는 자, 판매 협상을 위해 일시입국 하는 자(직접 판매 수반하지 않는 자),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으로서 관리자, 임원, 전문가이고, 투자를 설립하기 위해 일시입국 하는 자 제안된 영업 활동을 위한 보수의 일차적 소득원이나 주된 영업소 및 실제 이윤 발생 장소가 적어도 대부분 한국 밖에 있는 자 (입국 및 일시체류 허용) 출입국관련 법령 준수, 고용 허가 취득 요구 없이 90일 이하의 입국 및 일시체류 허용
기업내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된 한국 영역에 설립 된 자회사, 지점 또는 지정된 계열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피고용인(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 (입국 및 일시체류 허용) 출입국관련 법령 준수, 3년까지의 입국 및 일시체류 허용(조건이 유효하게 유지될 시 기간 연장 가능)
무역업자 및 투자자 (Traders and Inves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호간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실질적인 무역 수행하는 자, 상당한 금액의 자본 투자의 약정, 투자 설립, 개발 또는 운영에 있어 투자 운용, 자문 및 핵심기술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감독자 및 임원 (입국 및 일시체류 허용) 출입국관련 법령 준수,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 허용(조건이 유효하게 유지될 시 기간 연장 가능)
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 Suppli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록(Appendix) 10-가-1에 규정된 직업의 계약서비스 공급자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전문직에 고용된 자, 한국의 법·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필요한 학문적, 직업적 자격(요건)이 있고 능력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한 자, 대한민국에 상업적 주재를 두지 않는 기업(한국의 기업으로부터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서비스 계약을 취득해야 함)의 피고용인,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 고용된 자, 한국 소재 기업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 (입국 및 일시체류 허용) 출입국관련 법령 준수, 최대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 허용 노동시장테스트, 수량제한 부과 가능

구 분	내 용
배우자 및 부양가족 (Spouses and Depend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입국의 자격을 갖춘 기업내전근자, 무역업자 및 투자자,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입국 및 일시체류 허용) 출입국관련 법령 준수시, 동일한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 허용 허용된 범위 내에서 취업 허가 부여 가능

3. 계약서비스 공급자 양허 및 자격 요건(부록 10-가-1)

- 전문가(Professional)의 범주를 계약서비스공급자(Contractual Service Supplier)로 한정하여 설정함.

※ 전문가는 계약서비스공급자(CSS)와 독립전문가(IP: Independent Professional)로 구분되는 바, CSS는 서비스 수출국 법인 소속 자연인을 의미하며, IP는 법인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자연인을 의미

- 계약서비스 공급자 입국시에도 전문가의 급격한 유입 증가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필요시 노동시장테스트(labour market testing), 수량제한(numerical restriction)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 조항 마련 (부속서 10-가 제1절 10항)

투자

◆ 개요

▣ 투자챕터는 3개의 절(Section) 및 관련 부속서로 구성

- 제1절(Section A)은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투자유치국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대우 및 예외를 규정
 -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수용에 대한 보상, 송금 보장, 투자관련 이행요건 부과 금지, 고위경영진에 대한 국적 제한 금지, 혜택의 부인, 비합치 조치* 등
- 제2절(Section B)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에 대해 규정
- 제3절(Section C)은 투자챕터상 관련 용어 정의(definition)를 규정
- 국제관습법, 수용, 송금, 조세 등 부속서를 별도 규정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우

1. 투자챕터 적용 범위(제11.1조)

- 외국인투자자 및 적용대상투자와 관련된 당사국의 조치

※ 당시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 행사도 정부 권한 행사로 간주(제11.1조 3항)

- 협정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건 및 행위, 발효 이전에 종료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소급효 배제)

2.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제11.3조)

-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 하에서 내국 투자 및 투자자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연방제를 취하고 있는 호주는 우리 투자자에게 내주민 대우(in-state treatment) 부여 약속

※ 내주민 대우: 특정주(A주)내에서 FTA 체결 상대국 투자자에게 A주 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 이에 비해 타주민대우는 특정주(A주)내에서 FTA 체결 상대국 투자자에게 A주 주민과 동등한 대우는 아니라, 다른주(B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주민 대우가 타주민대우보다 더 우월한 대우

3. 최혜국 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제11.4조)

-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 하에서 제3국의 투자 및 투자자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다른 협정에서 이 협정 보다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이 협정의 당사국에게 자동적으로 그러한 추가적 혜택이 부여

- 단, 양국은 한·호주 FTA 발효 이후 서명되는 협정에 대해 MFN 대우를 부여하기로 합의(미래 MFN)

- 단, 일부 분야는 미래에 체결하는 협정에 의한 MFN 대우도 제외
 - 우리측은 1) 항공, 2) 수산, 3) 해운, 4) 위성방송, 5) 철도, 6)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등에 대한 MFN 대우를 배제
 - 호주측은 1) 항공, 2) 수산, 3) 해운 등에 대한 MFN 대우를 배제
- ※ 상기와 별도로 여타 분야에서도 MFN 대우가 배제되는 특정 조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유보에 명시

4. 대우의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제11.5조)

-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상 인정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
- 일반적으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원칙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의미

5. 수용 및 보상(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제11.7조)

- 정부는 1) 공공목적을 위해 2)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3)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4) 신속·적절·효과적으로 수용 당시의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보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 또는 국유화 가능
- 또한,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equivalent) 재산권을 침해하는 간접수용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규정

- “간접수용”이란 직접수용처럼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박탈, 국유화하는 것은 아니나, 특정 정부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의 가치가 직접 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

※ 간접수용의 판단 법리 및 예외적 상황 등에 대해서는 수용부속서에서 규정

6. 송금(Transfer) (제11.8조)

- 출자금, 이윤, 자본이득, 배당, 이자, 로열티 등을 자유롭게, 그리고 지체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규정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 파산, 지급불능, 예금자 보호, 주식 등의 거래 이전, 형법의 적용, 규제당국의 법집행으로서 금융기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결정을 따르기 위한 경우
 - 송금보장 조항의 예외로서 외환위기 시 자본거래 통제 등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인정하고, 이를 송금부속서에 규정

7.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 (제11.9조)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매각, 처분 등에 관하여 아래 특정 이행의무의 부과를 금지
- 일정 수준 수출, 일정수준 국내 재료 사용 달성, 국내상품 사용, 수출과 수입간의 연계, 수출과 판매간의 연계, 기술이전, 특정 지역으로의 독점공급 등 7가지

- 단, 일정 수준의 수출 의무와 기술이전 의무는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 가능
- 그 외 일정 비율 내국인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연구개발 수행 등 다른 이행요건은 모두 부과 가능
- 또한, 상기 금지된 이행요건도 ① 환경보호, 보건, 안전 등 공공정책적 목적의 경우, 또는 ② 유보(부속서)에 기재하는 경우 부과 가능

8.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제11.10조)

- 외국투자기업의 고위경영진 임명에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또는 과반에 미치는 다수에 대한 국적요건은 부과 가능
- 단, 그러한 요건이 외국인 투자자의 해당투자 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materially impair the ability)해서는 안됨

9. 혜택의 부인(Denial of Benefits) (제11.11조)

- ①제3국인이 소유하고 혜택부인 당사국이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기업, ②제3국인이 소유하고 타당사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타당사국 기업(이른바 paper company)에게는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

10. 비합치 조치(Non-conforming Measures) (제11.12조)

□ 유보목록에 기술된 조치에 대해서는 협정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아래와 같이 규정

- ① 내국민 대우(NT), ② 최혜국 대우(MFN), ③ 이행요건(PR), ④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MBD) 등에 대해 합치되지 않는 조치를 협정 부속서 유보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동 조치에는 상기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서비스·투자 분야 유보목록은 공통으로 작성, 협정의 부속서로 포함

– 주요 유보내용은 서비스 챕터 설명자료 참조

- 또한 정부조달과 보조금에는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관련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1.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개요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제1절의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제11.1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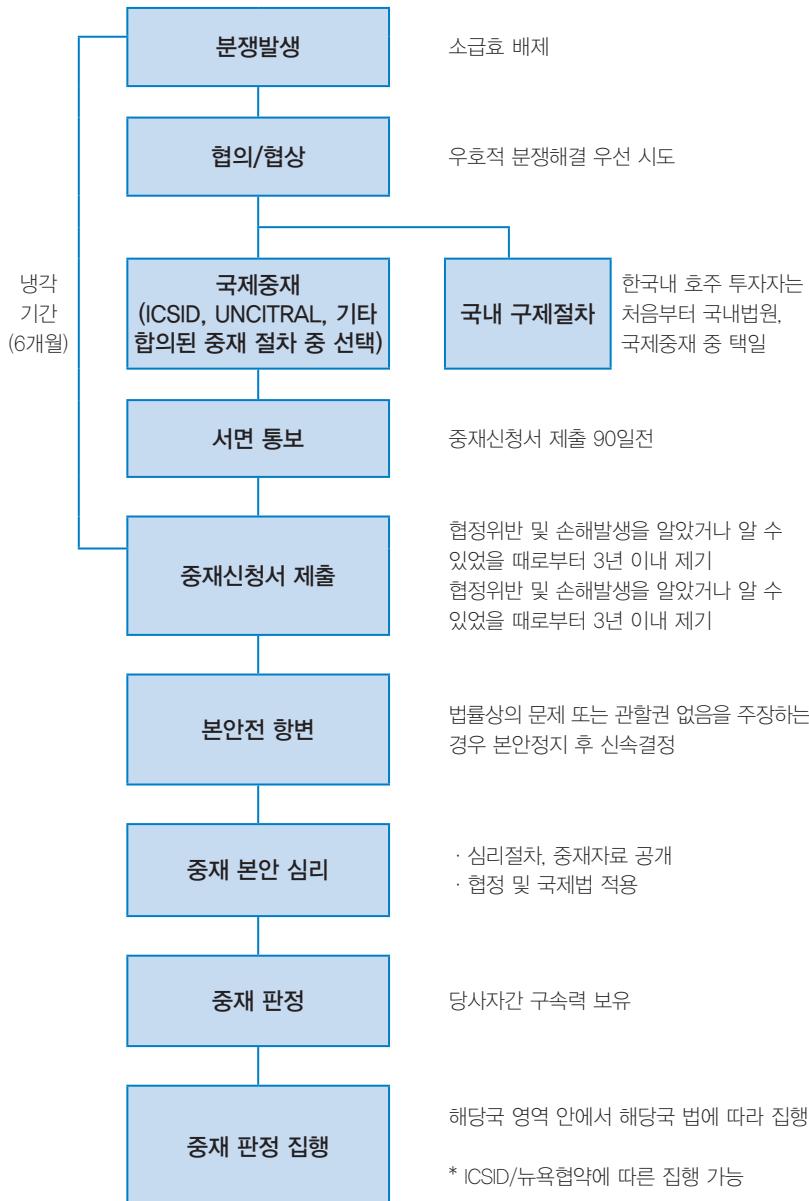
□ 국제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Tribunal)에서 심리 (제11.19조)

-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지명하고, 의장중재인이 되는 나머지 1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선임
- 단, 중재 제기후 7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ICSID 사무총장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지 않은 한 제3국 국적을 가진 자를 의장중재인으로 선임

▣ 이용 가능한 중재 기관 · 절차 (제11.16조)

-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World Bank 산하 기구로서 회원국(우리나라와 호주 포함)에게 투자자–국가간 분쟁절차를 제공
※ ICSID 추가절차규칙: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절차의 관할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모국과 피청구국이 모두 ICSID 협약의 당사국이어야 하는 등 협약 제25조에 정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반면, 양국 중 일방이 ICSID 협약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중재절차 진행 가능
-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무역법 제정을 위한 UN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국제중재절차 및 규칙을 규정
-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제3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

〈 ISD 절차 개요 〉



2.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적용 범위

- ISD 대상으로서 협정상 의무 위반 외에 투자계약 및 투자인가 위반 사항을 포함 (제11.16조)

- 그러나, 이로 인하여 ISD의 대상이 과도히 확대되지는 않음.

- ① 투자계약*은 우리 정부가 사실상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고,
- ② 투자인가 관련, 우리측은 '투자인가기관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한편, 호주측은 외국인투자 심사제도가 투자인가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각주를 추가

* 협정상 투자계약의 정의 : 외국인투자자가 상대국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국영기업체 제외)와 지원채굴, 발전,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공급계약, 인프라 건설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투자계약

- 우리가 체결한 다수 투장보장협정도 한·호 FTA의 투자계약, 투자인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계약의무 준수조항을 포함

* 포괄적 국가계약의무 준수조항 : '우산조항(Umbrella clause)'라 하여 협정상 의무 위배 외에 여타 모든 투자자-국가간 분쟁을 협정상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절차에 회부 가능토록 한 조항

3. 중재 청구

- ① 외국인투자자가 자신의 손실에 대하여 직접 중재 청구 또는 ② 투자기업을 소유, 통제하는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을 대리하여 중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제11.16조제1항)

- 중재의 병합 : 동일한 사안으로 다수 투자자가 각각 별개의 ISD를 청구한 경우, 정부는 그러한 중재사건들을 강제로 병합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 정부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중재판정에서 대응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제11.25조)

4. 중재절차의 투명성

- 중재심리 및 제출 서류를 모두 일반에게 공개 (제11.21조)
 - 단, 비밀정보는 국내 법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보호되도록 규정
- ※ 협정 제11.21조3항은 정보 비공개 사유로 ① 법 집행 저해, ② 사생활 보호 또는 공공정보 관련 법령과의 비합치, ③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경우를 규정
- 중재재판부는 분쟁 당사자와 협의후 시민단체 등 제3자(amicus curiae) 의견제출을 허용 가능 (제11.20조제5항)
- 또한 영어와 한국어를 심리, 중재제기, 결정, 판정 등 모든 중재 절차에서 공식언어로 사용 (제11.20조제3항)

5. 국제 중재와 국내 제소 절차와의 관계 (제11.18조)

- 투자자는 중재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법원에서 절차를 개시·계속하지 않겠다는 서면포기서를 제출해야 함
- 단, 호주 투자자는 협정상 의무 위반의 경우,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국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 제소 중 하나를 선택한 후에는 다른 절차 제소가 불가능(부속서 11-바)

- 한국인투자자는 호주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절차 개시 후에는 호주법원 제소가 불가능하나, 호주법원 제소 후에는 동 호주 국내 법원 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국제중재절차 개시 가능

6. 준거법(제1122조)

- 협정상 의무위반 사안에 관한 국제중재절차
 - 본 FTA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규칙
-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 위반사안에 관한 국제중재절차
 - 해당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에 규정된 법, 또는 분쟁당사자간 합의된 법
 - 이러한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청구국의 국내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규칙

7. 중재판정의 효력(제1126조)

- 중재판정은 단심제로서 확정력을 가짐(binding and final)
 - 중재판정은 금전적 손해와 적용가능한 이윤 및 재산권의 복구만으로 한정되며, 해당 조치를 취소하도록 할 수 없음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명령은 불가

◆ 정의 (제11.28조)

▣ 투자

- 투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며, 자본 또는 기타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위험의 감수와 같은 투자의 성격을 가진 아래 자산을 의미

① 기업

② 주식, 증권, 기타 기업의 지분참여 형태

③ 채권, 회사채, 또는 기타 채무증서, 대부

④ 선물, 옵션, 그리고 기타 파생금융상품

⑤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 그리고 이와 유사한 계약

⑥ 지적재산권

⑦ 면허, 인가, 허가, 그리고 국내법에 따라 부여된 유사한 권리

⑧ 기타 유형 또는 무형,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 관련 재산권*

* 시장점유율, 시장접근, 기대이익, 이윤창출 기회는 그 자체로서 투자가 아님을 명시하는 각주 추가(각주47)

- 그러나, 본 협정의 목적상 투자성격을 가지는 대부분이 아니라면 순수하게 상업적 거래로 인한 대금청구권은 투자가 아님을 규정

▣ 투자자

- 일방의 국가, 공기업, 국민 또는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영토내에서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경우를 의미
 -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 간주

▣ 투자계약

- 중앙정부와 투자자간 서면계약으로서 투자자가 그 계약에 의존하여 투자설립 또는 인수를 한 경우를 말하며, ① 천연자원의 채굴, 판매 등 ② 전력, 수도, 통신 등의 공공서비스 공급, ③ 교량, 댐 등 인프라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

▣ 투자인가

- 외국인투자당국이 투자자에게 부여한 인가권을 의미
- 우리측은 현재 투자인가기관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한편, 호주측은 1975년 「외국인인수합병법」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정책에 따른 재무부장관의 결정은 투자인가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각주)

* 다만, 호주의 투자 사전심사기준액을 호-미, 호-뉴질랜드 FTA 수준으로 상향 조정(2.4억 호주불 → 10억 호주불)하여 기준액 미만은 사전심사가 면제되어 우리 기업들의對호주 투자 원활화 기대(호주의 현재유보(부속서) 1번째유보)

◆ 부속서

▣ 수용부속서 (부속서11-나)

- 직접수용 및 간접수용의 정의와 간접수용의 판단법리를 규정

- 한·호주 FTA 투자협정은 간접수용의 인정범위가 더욱 제한될 수 있도록, 동 수용부속서상 간접수용 판단법리를 추가적으로 명확히 하고 정당한 공공복지정책 목적의 예시에 부동산가격 안정화정책을 포함(각주56)

* 간접수용 판단기준 중 정부조치의 성격 관련, 우리 법제상 특별희생 법리를 추가 (각주53)

▣ 조세 부속서 (부속서11-자)

- 조세정책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를 두어 세금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
- 조세 부속서의 주요 내용
 - 세금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으며,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과 원칙에 부합된 조세조치와 비차별적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조세당국의 정책적 권한을 보장

▣ 송금부속서(단기세이프가드) (부속서11-다)

- 국제수지악화 및 외환 위기 등의 심각한 대내외 여건 변화가 있을 시, 외국환거래를 통제하는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예:자본거래허가제)를 발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부속서에 규정
- 동 단기 세이프가드는 협정상 의무에 배치되지 않음.

* 상세 내용은 금융서비스 분야 내용 참조

□ UNCITRAL 투명성 규칙 관련 부속 서한

- UNCITRAL 투명성 규칙의 적용 관련, 양국이 협정 발효후 1년 내 동 규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협의키로 합의

* '13.7월 UNCITRAL 투명성 규칙* 채택에 따라 4월 발효 이후 체결되는 투자협정에는 동 투명성 규칙이 자동 적용(적용 배제 위해서는 명시적 적용 배제 필요)

* 동 규칙 주요내용은 △중재절차 개시시 정보 공표, △중재 관련 문서(중재통보, 변론, 서면입장, 제3자 입장 등) 공개, △제3자 및 비당사국 서면 입장 제출 허용, △심리(hearing) 공개, △비밀정보 보호 등

정부조달

◆ 개요

- ▣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호주와 FTA를 체결하여 정부조달시장을 상호개방
 - * 우리는 WTO 정부조달협정 회원국으로서 이를 적용 중이나, 호주는 동 협정에 미가입
- FTA 협정상 정부조달 규정은 전반적으로 WTO의 개정 정부조달 협정문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민자사업도 범주에 포함
- 특히, 개방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기업 조달 까지 상호 개방하여 우리 기업의 호주 조달 시장 진출 기회 확대
- ▣ 한편, 우리의 관심사인 학교급식과 국내 중소기업 관련 조달 우대에 대한 예외도 확보

◆ 상세 내용

1. 적용범위 및 예외(제121조, 제122조)

- ▣ (적용범위) 조달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서 양허 기준가(아래 개방수준 참고) 이상의 구매 · 임차 · 할부 구매 등에 적용

-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Build-Operate-Transfer) 및 공공사업실시협약 등 민간투자 방식도 포함
- ▣ (예외) R&D, 정부 보조금, 공공 고용계약, 부동산 취득, 연금 등 관련 금융 자문·자산 관리 서비스 등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

개방 수준

- 중앙정부, 지방정부(지자체), 공기업을 모두 개방하여,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호주 조달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 우리 양허 수준은 이미 발효 중인 GPA 수준에 맞추어 우리측 부담 배제

	한·호주 FTA	GPA(한국 양허) ※호주는 미가입·미개방	개정 GPA(한국 양허) ※호주는 미가입·미개방
상품 및 서비스 조달	① 중앙: 13만 SDR 이상 ② 지방: (한) 20만 SDR 이상 (호주) 35.5만 SDR 이상 ③ 공기업: 45만 SDR 이상 * 서비스 조달 제외	① 중앙: 13만 SDR 이상 ② 지방: 20만 SDR 이상 ③ 공기업: 40만 SDR 이상	① 중앙: 13만 SDR 이상 ② 지방: 20만 SDR 이상 ③ 공기업: 40만 SDR 이상
	① 중앙: 500만 SDR 이상 ② 지방·공기업: 1,500만 SDR 이상	① 중앙: 500만 SDR 이상 ② 지방·공기업: 1,500만 SDR 이상	① 중앙: 500만 SDR 이상 ② 지방·공기업: 1,500만 SDR 이상
건설조달			

* 1 SDR = 1745.38원 (기획재정부 고시 기준, '13.1.1일~'15.1.1일)

2. 학교급식 및 중소기업 관련 예외(부속서 12-가)

- ▣ 한국의 학교 급식 및 국내 중소기업의 조달 참여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한·호주 FTA 정부조달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배제

- 학교급식과 관련한 예외를 명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구매하는 학교급식용 식자재의 경우 우리 농산물 우선 구매 가능
- 국내법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 관련 조치를 예외로 인정

3. 일반원칙 (제123조)

- 한·호주·양국 조달 기관은 타방 공급자를 비차별적으로 대우
 - 국내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되, 외국과 제휴 또는 외국인 소유 등을 근거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음.
 - 양국 조달 기관의 대응구매를 금지하고, 협정상 비차별 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달을 분할하는 행위 등 금지

* 대응구매(offset) : 수출을 대가로 하는 구매(조달)

- 공개, 선택, 제한 입찰 등 입찰방식은 조달기관이 자유로이 선택 가능

4. 조달 참가 조건 (제126조)

- 조달 기관이 사전에 공고하거나 입찰 서류에 명시한 조건에만 근거하여 조달 진행
 - 공급자의 조달 참가 또는 낙찰 조건으로 과거 실적 요구 금지

- 다만, 파산, 혀위신고, 중대한 법 위반 행위, 과거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 조달 참여 배제 가능

5. 국내심의 절차(구제절차) (제12.15조)

- 양국은 타방 국가 공급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행정·사법 절차상 시정조치를 구할 권리를 보장
- 이의제기 해결 절차에 대한 정보도 제공

6. 입찰서의 접수와 개찰 (제12.12조)

- 양국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조달 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특정 공급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함
- 특히 입찰 공고 및 서류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부합하는 공급자를 낙찰하여야 함
- 조달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정정하는 기회를 주는 경우,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7. 기타

- 조달의 공고 및 기간 (제12.4조, 제12.5조)

- 조달 공고는 관심있는 공급자가 볼 수 있는 전자적 매체와 서면으로 공표

- 입찰서 제출은 조달 공고의 공표일로부터 25일 이상 부여

-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10일 이상 부여

▣ 기술 규격 (제12.8조)

- 양국 조달 기관은 기술규격 등으로 인해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르되, 외형보다는 성능 및 기능을 기준으로 규격을 규정하여야 함

- 천연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규격의 적용은 가능

▣ 조달 과정의 무결성 보장 (제12.14조)

- 자국 조달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형사 및 행정 처벌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공정한 조달 절차 확보

지식재산권

◆ 개요

- ▣ WTO 지식재산권 협정(TRIPS)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을 마련하여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도모
- (상표권)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냄새·소리 등 비시각적인 상표에 대해서도 보호
- (저작권) 일시적 복제 등을 포함하여 저작권자의 포괄적 권리를 인정하고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확대하여 보호하는 등 저작권 보호 강화
- (특허권) 공지 예외기간을 12개월로 규정하는 등 특허권자의 보호 기반 확대
- (집행) 유효한 명령 불복시 제재, 직권 국경조치 등 지재권 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재권자 보호
- (협의) 이해 및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식재산 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칙적으로 매년 회합하여 양측간 지재권 협력 강화

◆ 상세 내용

1. 상표(제132조)

- ▣ 냄새 또는 소리로만 구성된 상표도 상표로서 등록 가능토록 규정
 - 기업이 사용하고 식별력도 있는 경우 비시각적인 상표의 경우도 권리로서 보호 가능
- ▣ 유명상표를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할 경우,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간의 견련성 등이 인정되면 유명상표의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보호
 - 특히, 유명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사용되어 혼동 및 기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표의 등록 취소 및 사용 금지 등이 가능
- ▣ 상품·서비스가 일정한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제도를 규정
 - ※ 증명표장제도의 예 : 미국의 Wool Mark, Cotton Mark 등
- ▣ 동종업자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 구성원 등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 제도도 규정
 - ※ 단체표장은 주로 지방특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판매하는 법인의 단체원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예 : ○○영농조합법인의 “○○딸기”)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제135조)

- 양국은 저작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가 저작물 · 실연 · 음반 및 방송의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규정 (영구적 복제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복제도 포함)

※ 일시적 복제(Temporary Reproduction) :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을 컴퓨터를 통하여 이용할 때, RAM 등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복제 등을 지칭

- 다만,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자 등의 권리(영구적 · 일시적 복제의 허락 또는 금지)에 대하여 제한 또는 예외 설정 가능
 - 한편, 저작자 등이 판매 또는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하여 저작물 등의 원본과 복제물을 공중에 제공하는 것을 허락 및 금지하는 권리도 규정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사후(생존기간 포함) 또는 발행 (창작) 이후 70년 간 보호
-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통제와 접근통제로 구분
 - 이용통제(copy/use control): 저작물의 복제, 전송, 배포 등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통제
 - 접근통제(access control):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

- ▣ 저작물 등의 식별을 위한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
-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와 제거·변경된 저작물 등을 전송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금지

권리관리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 권리자, 이용조건 등을 식별하는 정보로서 저작물에 부착되거나 공연, 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지칭

3. 특허(제138조)

- ▣ 양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해 신규성, 독창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 특허가 가능하도록 인정
- ▣ 다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 가능
 - ※ 예외사유 : ①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② 환경 보전, ③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활용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이나, ④ 인간 및 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진단·치료 방법 등인 경우
- ▣ 또한 공지 예외기간을 12개월로 규정하여 특허권자의 보호기반 확대
 - ※ 공지예외기간(Grace period) : 공지가 출원일 12개월 이전에 특허 출원인으로부터 실시 또는 기인된 경우,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을 부정하지 않음

4. 집행(제139조)

- ▣ 양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된 행정 및 사법적 결정이 서면으로 진행되고 결정의 근거 등이 명시될 수 있도록 규정
- ▣ 지식재산권 관련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절차를 마련하되, 권리침해자에 대해서는 권리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
 - 사법당국으로 하여금 권리 침해 협의가 있는 상품, 재료 및 도구 등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
 - 위조·불법 복제된 상품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폐기
- ▣ 사법당국은 사법절차에서 권리침해자로 하여금 침해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법당국의 명령을 권리침해자가 위반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제재 부과 가능
- ▣ 소규모의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시 간소한 조정 절차 등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대체분쟁해결제도 마련
- ▣ 양국 세관당국은 위조 상품 등을 반출 정지하는 경우 이를 요청한 권리자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요구 가능
 - 물품이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되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리자 요청 없이 직권으로도 관련 조치 가능
- ▣ 고의적인 상표 위조 및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에 대한 침해의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
- ▣ 인터넷 상의 반복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

5. 지식재산 위원회(제13.12조)

- 이행 및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식재산 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칙적으로 매년 회합하여 양국 간 지재권 협력 강화

경쟁정책

◆ 개요

- 경쟁,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 등을 증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 상세 내용

1. 경쟁의 촉진 및 경쟁법의 적용 (제142조, 제143조)

- 양국은 경쟁법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을 설치하며 자국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조치의 집행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
- 경쟁 관련 정책은 양국 간 국민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대우하여야 하고, 정책 집행의 투명성, 절차적 공정성 등을 확보

2. 경쟁 중립성 (제144조)

- 양국은 공기업에 대해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영업 활동(비영업, 비상업적 활동 제외)에 대한 경쟁상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야 함

3. 협력 및 소비자 보호 (제14.5조, 제14.8조)

- 양국은 경쟁의 촉진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협력

4. 분쟁해결 (제14.9조)

- 경쟁정책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본 FTA 협정상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음

전자상거래

◆ 개요

- 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과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

◆ 상세 내용

1.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제153조)

- 전자적 전송에 대하여 관세 부과 면제

※ 전자적 전송 : 전자기적 또는 광학적 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전송을 의미

2.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제155조)

- 전자상거래 당사자는 자율적으로 전자인증 수단 선택이 가능

- 다만, 높은 수준의 보안 및 신뢰가 요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가 선택한 방법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지정 기관을 통해 증명하도록 요구 가능

- ※ 전자인증 :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입증하는 절차 등
- ※ 전자서명 : 서명자가 서명하였음을 증명하고 서명자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기록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의미

3. 온라인 소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제156조, 제158조, 제159조)

-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상 소비자에 대해 다른 형태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호 조치와 최소한 동등한 보호 조치를 부여해야 함
-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유지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 기준도 고려
- 양 당사국은 전자 메일에 대한 보호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원치 않은 스팸과 텔레마케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함

4. 적용범위 (제152조)

- 제7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8장(금융서비스), 제11장(투자)에 유보된 사항에는 적용 배제

협력

◆ 개요

- ▣ 경제협력의 목적, 범위, 방법을 규정하고, 개별 협력 분야를 세부 조항을 통해 명시
- ▣ 양국은 관심분야(① 농업, 수산업 및 임업, ② 에너지 · 광물)에 대하여 다양한 협력활동에 합의하여, 세부 분야별 협력강화 계기 마련

◆ 상세 내용

1. 농업, 수산업 및 임업 (제16.1조~제16.12조)

- ▣ 양국은 농업, 수산업 및 임업 분야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의해, 관련 정책의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연구 프로그램, 인력교류, 상호 투자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증진함

분야별 협력기능 사안

- (농업) 축산 및 축산공업, 원예, 천연섬유 생산 등을 포함한 농업, 농업정책, 농업경제학, 농가승계, 농촌개발, 도시근교 농업 등
- (수산·양식업) 부수어획 및 해양환경, 레저어획, 불범 및 비규제 어업,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수산 경제학과 자원관리 등
- 아울러, 양 당사국은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수산업 협력 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함
- (임업) 목재자원 무역증진, 산림자원의 개발·이용 및 지속가능 관리, 산림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산불관리 및 통계, 산림 해충 통제 등
- (SPS) 지역 동물 및 식물 질병 감시, 동물 질병, 식물 해충 및 질병의 예방 및 통제, 식품 내 병원성 미생물 탐지 방법 등

- 식량 공급 안보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대호주 농업투자를 통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호주측의 수출제한 조치시, 사전협의 의무화 및 조기 복구책 마련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양국은 농업, 수산업, 임업 분야의 협력활동 이행의 검토, 점검 및 평가를 위해 농업협력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원칙적으로 매년 회합

2.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제16.13조~제16.20조]

- 양국은 에너지·광물 자원 분야의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의해, 에너지 효율 및 기후변화 관련 조치를 포함하여 에너지·광물 자원의 탐사, 개발, 운송 및 이용에 관한 연구개발, 정책, 학술교류 등에 대한 협력활동 증진

- ▣ 양국은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에서 호혜적인 무역 및 투자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
 -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광물 자원의 탐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투자 증진, 투자 정보의 제공 및 교환 촉진, 안정하고 투명한 투자여건 유지 등
- ▣ 양국은 에너지·광물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상호교환
 - 에너지·광물 자원의 매장과 개발 계획에 관한 지질학적 정보와 관련 투자정보, 입찰, 기반시설 개발 및 채굴사업과 같은 투자 기회에 대한 정보, 에너지·광물 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법규 및 정책정보 등
- ▣ 주요 에너지·광물 자원의 극심하고 지속적인 공급 중단 사태 발생시, 적절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사태 해결 방안 모색
- ▣ 양국은 에너지·광물 자원 분야의 협력활동 이행의 검토, 점검 및 평가를 위해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원칙적으로 매년 회합

노동

◆ 개요

- ▣ 양국이 준수해야 할 기본노동권을 설정하고 관련법과 정책을 채택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양국 간 협력 활동도 증진
- ▣ 양국은 국내법상 노동의 보호수준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무역 및 투자를 장려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 상세 내용

1. 기본노동권 (제17.1조제1항)

- ▣ 양국은 '1998년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상의 원칙 및 권리를 국내법 등에 채택하며 유지하도록 노력
- ※ ①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② 모든 형태의 강제적 노동의 철폐 ③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④ 고용 및 직업상 차별 철폐

2. 구체적 약속 (제17.1조제2항)

- ▣ 양국은 각 당사국이 자국의 정책과 국가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국내법상 규정 등을 운영하는 권리를 존중

3. 의무 완화 금지 (제17.1조제4항)

- 양국은 무역 및 투자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1998년 ILO 선언상의 원칙 및 권리를 반영한 국내법 규정의 적용 배제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

4. 협의 등 (제174조)

- 양국 간 협의 및 임시위원회(ad hoc Committee) 설치를 통해 본 장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당사국의 요청을 처리

5. 분쟁해결절차 미적용 (제176조)

- 본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FTA협정상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하지 않기로 합의

환경

◆ 개요

- ▣ 양국이 준수해야 할 환경 보호 수준을 설정하는 동시에 환경 관련 자국 법과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 다만 양국이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법상 환경의 보호수준을 약화하여서는 안 됨을 명시

◆ 상세 내용

1. 보호수준(제18.1조)

- ▣ 양국은 환경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호수준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
- ▣ 환경보호의 수준 및 환경발전을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환경법 및 정책을 운영하는 주권적 권리도 인정

2. 다자 간 환경협정 (제182조)

- 양국은 양국 모두가 당사국인 다자 간 환경협정이 국내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동 협정의 이행이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대함을 인정

3.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제183조)

- 양국은 무역과 투자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법상 환경의 보호수준을 약화하여서는 안 됨을 명시

4. 환경친화적 무역 (제184조)

- 양국은 환경기술,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적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합의

5. 협의 및 제도적 장치 (제186조, 제187조)

- 본 장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임시 위원회 (ad hoc committee)를 설치
 - 본 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당사국 간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임시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합의를 시도

6. 분쟁해결절차 미적용 (제189조)

- 본 장과 관련된 사안은 FTA 협정상 분쟁해결 적용대상에서 제외

투명성

◆ 개요

- ▣ 투명성 분야는 국내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의무사항 규정
- ▣ 한·미 FTA 내용과 유사하나, 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정

◆ 상세 내용

- ▣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된 법률·규정·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신속히 공표하고, 이해관계인과 상대국에게 의견제시 기회 보장 (제19.1조)
- ▣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 (제19.2조)
- ▣ 행정절차 개시 시에 가능하다면, 절차의 직접 대상이 되는 상대국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의 성격 및 법적근거, 쟁점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의견개진 기회 제공 (제19.3조)
- ▣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된 행정 처분을 재심하기 위한 공평

하고 독립적인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절차를 수립·유지
(제19.4조)

- 재판소/절차에서 각자의 입장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 및 기록에
근거한 결정이 제공되도록 보장

분쟁해결

◆ 개요

- ▣ 국가대 국가의 분쟁해결절차는 “①당사국간 협의→②공동위원회 회부→③패널의 설치→④패널의 심리→⑤패널의 판정→⑥패널 판정의 이행”의 순서로 진행
- ▣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와 WTO 분쟁해결절차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3국은 선택가능
- 다만,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FTA와 WTO 분쟁해결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경우,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다른 절차의 이용을 불허
- ▣ 분쟁해결절차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
 - 분쟁해결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유도
 - 패널 판정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패널 판정 불이행시 보상 또는 혜택의 정지 절차를 규정

◆ 상세 내용

1.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범위(제202조)

- ▣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와는 별도)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용됨

- 협정 의무와의 불합치 조치
- 협정 의무 불이행
- 비위반제소

– 비위반제소 적용범위 : 제2장(상품무역),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7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2장(정부조달)

※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일방 당사국의 조치로 인해 타방 당사국이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 되거나 침해되는 경우 국가대 국가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제204조)

- ▣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와 WTO 분쟁해결절차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3항은 선택가능
- 다만,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FTA와 WTO 분쟁해결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경우,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다른 절차의 이용을 불허

3. 당사국간 협의(제20.6조)

- 제소국의 서면으로 된 협의요청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은 신속히 협의를 개시할 의무

4. 공동위원회 회부(제20.7조)

- 제소국의 서면협의 요청 후 60일 이내 분쟁 미해결 시, 양 당사국은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회부 가능
 - 공동위원회는 신속히 개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5. 중재패널 절차(제20.8조~제20.12조)

- 공동위원회에 회부 후 60일내에 분쟁 미해결시, 제소국은 패널설치 요청 가능
 - 중재패널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중재패널 설치일은 마지막 패널이 임명된 날
 - 중재패널의 심의는 비공개 (부속서 20-나 모범 절차규칙)
- 패널은 의장 임명 후 180일 이내에 최초보고서 제출
- 패널은 최초 보고서 제출 이후 45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 제출

패널 구성

- 패널은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
- 3인 중 2인은 각 당사국이 1인씩 임명하고, 패널 의장인 나머지 1인은 양국이 합의
- 패널설치 요청 이후 45일내 모든 패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남아 있는 패널은 각국이 제출한 후보명부(3인)에서 추첨에 의해 결정

6. 패널보고서의 이행(제20.13조)

- 협정상 의무에 불합치하거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한 경우, 피소국은 해당 불합치 또는 무효화/침해를 제거해야 할 의무

7. 불이행(제20.14조)

- 피소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는 경우, 제소국의 요청에 따라 보상 협의를 개시
- 제소국은 아래 사유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협정에 의해 피소국에 부여된 혜택을 정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 통보 30일 이후에 혜택의 정지 가능
 - 보상 협의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보상에 미합의 또는,
 - 보상에 합의하였으나, 피소국에서 합의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 ▣ 피소국은 제소국이 정지한 혜택의 수준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지 아니하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동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원심패널 재소집 가능
 - 패널이 피소국이 불합치/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정하지 않는 한, 제소국은 패널이 판정한 수준의 혜택정지 가능
 - 패널이 그 수준을 판정하지 않은 경우, 제소국은 기존 제안한 수준까지 혜택정지 가능

8. 이행 검토 (제20.15조)

- ▣ 피소국은 불합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소국에 서면 통보하여 그 사안을 패널에 회부 가능
 - 패널은 피소국의 서면 통보 후 90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 패널이 피소국이 불합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제소국은 정지했던 혜택 복원

제도규정

1. 공동위원회 (제21.3조)

- 양국 통상장관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 설치
-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에 의해 설치된 모든 위원회 및 작업반의 업무를 감독하고, 협정상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시 협정의 개정을 검토 가능
- 정기회의는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3년간 매년, 그 이후에는 상호 결정에 의해 개최

2. 위원회 및 작업반 (제21.4조)

-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 설치 (제21.4조 제1항 및 부속서 21-가)
 - 위원회 : 상품무역위원회, 한반도 역외지역가공 위원회, 원산지 규정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 통신위원회, 지식 재산 위원회, 농업협력위원회,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위원회
- ※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임시 노동위원회와 임시 환경위원회 설치 가능

■ 작업반 :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

※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임시 TBT작업반, 임시 시청각 공동제작 위원회 설치가능

▣ 공동위원회와 산하 위원회 ·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상호합의로 이루어짐 (제21.5조)

일반적 규정 및 예외

1. 일반적 예외 (제22.1조)

▣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적용

- GATT 제20조와 관련 주해 적용 챕터 : 협정 제2장(상품무역),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5장(TBT 및 SPS), 제16장(협력)

※ GATT 제20조 상의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조치에 환경보호조치도 포함되고, 천연자원의 보존에는 생물 자원의 보존도 포함되는 것으로 양해

- GATS 제14조 적용 챕터 : 협정 제7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9장(통신), 제10장(자연인의 이동), 제15장(전자상거래)

※ GATT 제14조 상의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조치에 환경보호조치도 포함되는 것으로 양해

참고 : GATT 제20조/GATS 제14조상의 일반 예외조치

※ GATT 제20조상 예외조치

-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금·은의 수출입,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호, 역사·예술 유물의 보호, 공급부족 상품의 취득·유통에 필수적인 조치 등

※ GATT 제14조상 예외조치

- 공중도덕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안전, 사기 행위의 방지, 사생활의 보호 등을 위한 조치

- ▣ GATT 제20조와 GATS 제14조상의 일반예외 조치 중 일부를 제 11장 투자챕터에도 준용
 -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 역사·예술 유물의 보호,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호
- ※ GATT 제20조 상의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조치에 환경보호조치도 포함되고, 천연자원의 보존에는 생물 자원의 보존도 포함되는 것으로 앙해

2. 안보 예외(제222조)

- ▣ 국가 안보상의 예외조치 허용
 -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비공개 가능
 -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 또는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한 의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 가능
- ※ ISD상의 중재절차에서 동 예외를 원용하면 동 예외가 적용되는 것으로 중재 판정부가 판정토록 함

3. 과세(제223조)

- ▣ 과세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협정과 여타 조세조약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
- ▣ 과세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ISD)가 적용되나,

- ISD 회부전 양국 조세당국(한국 : 기획재정부, 호주 : 재무부)이 먼저 협의하고,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ISD 제소를 진행

※ “조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부속서를 투자 챕터에서
채택, 상세내용은 투자분야 참조

4. 정보공개(제224조)

- 협정상 어떤 내용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공 이익에 반하거나, 특정기업 · 공공 · 민간의 합법적인 상업상 이익을 손상하는 비밀 정보의 제공 또는 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최종규정

- ▣ 협정문의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및 각주(Footnotes)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 (제23.1조)
- ▣ 협정의 발효 (제23.2조)
 - 협정은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의 접수 30일 이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로 발효
- ▣ 협정의 개정 (제23.3조)
 - 양국은 협정 개정에 합의할 수 있으며, 개정은 양국이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
 - 협정문에 통합되어 있는 WTO 협정이 개정되는 경우, 양국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
- ▣ 협정의 종료 (제23.4조)
 - 한 당사국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일방 통보하면, 180일 경과한 후 협정 효력이 종료

※ 협정 종료 의사가 통보된 후, 당사국은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 ▣ 한국어와 영어 협정문과 동등한 정본 (제23.5조)

한·호주 FTA 상세설명자료

2014년 4월 인쇄 & 발행

발행 |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Tel. (044)203-5753

인쇄 | (주)나모기획
Tel. (02)503-5454

